

불심검문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研 究 陣》

연구위원	임	웅(성균관대 교수)
	임	학 순(한국문화정책개발원책임연구원)
연구지도위원	이	영 란(숙명여대 교수)
연구실장	송	인 동(충 경)
연구관	정	순 도(경 정)

목 차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9
2. 조사 대상	10
II. 不審檢問制度의 법적 개념	12
1. 不審檢問의 의의	12
2. 不審檢問制度의 目的	13
3. 法的 性格	14
III. 不審檢問制度의 沿革	19
1. 警察官職務執行法의 制定과 不審檢問	19
2. 警察官職務執行法의 改正과 不審檢問	20
3. 現行 警察官職務執行法과 不審檢問	22
IV. 不審檢問制度의 內容	25
第 1 節 不審檢問	25
1. 不審檢問의 對象	25
2. 不審檢問의 方法	32
3. 節次的 保章	38
4. 所持品 檢査	41
5. 自動車 檢問	48
第 2 節 任意同行	55
1. 任意同行의 意義와 法的 性格	55
2. 同行事由	58

3. 節次的 保障	59
4. 有形力行事的 禁止	63
5. 身體拘束禁止와 答辯強要禁止	64
V. 各國의 不審檢問制度	66
第1節 美 國	66
1. “Stop and Frisk”의 意義	66
2. 관련판례	67
3. 不審檢問制度의 立法化와 美國法律協會의 模範法典	72
第2節 英 國	79
第3節 獨 逸	86
1. 統一警察法 模範草案에서의 不審檢問制度	86
2. 刑事訴訟法上の 檢問과 身元確認	88
第4節 프랑스	90
1. 身元確認	90
2. 留置(garde ä vue)	92
3. 所持品檢査	94
第5節 日 本	95
1. 警察官職務執行法과 職務質問	95
2. 警察官職務執行法과 警察法 제2조 제1항	97
3. 所持品檢査의 法的 根據	98
VI. 不審檢問制度의 運營實態	100
第1節 不審檢問制度의 類型分類	100
1. 平常時의 不審檢問檢索과 一濟檢問檢索	100
2. 活動目的別 分類	101
第2節 不審檢問檢索의 運營體系	102
1. 不審檢問檢索의 基本體系	102

2. 徒步 不審檢問檢索의 運營體系	105
3. 車輛 不審檢問檢索 運營體系	106
4. 檢問所의 不審檢問檢索 運營體系	110
第3節 不審檢問檢索의 照會體系	111
1. 照會體系	111
2. 照會類型과 實施 件數	112
3. 照會 所要時間	115
第4節 不審檢問檢索 裝備實態	118
1. 不審檢問檢索 裝備의 重要性	118
2. 朝會用 컴퓨터 단말기	119
3. 無電機 등 通信裝備	120
4. 巡察車 컴퓨터 단말기(M.D.T)	124
5. 車輛番號 自動判讀器(AVNI)	125
第5節 一濟檢問檢索制度의 運營實態	127
1. 一濟檢問檢索의 基本體系	127
2. 一濟檢問檢索의 運營實態	129
第6節 不審檢問 警察官의 勤務行態	131
1. 警察官의 檢問檢索 資質과 實施指針	131
2. 被檢問者에 대한 不審檢問 類型別 實施	133
3. 巡察活動과 不審檢問檢索	142
4. 不審檢問의 主要 對象	145
第7節 國民들의 不審檢問檢索에 대한 反應行態	147
第8節 不審檢問檢索의 效果와 制約要因 評價	151
VII. 不審檢問檢索制度 改善方案	157
第1節 基本方向	157
第2節 現場卽應的 檢問檢索 體系確保	158
1. 現場 中心의 照會體系	158

2. 地域特性을 反映한 戰略的 檢問檢索 實施	158
第3節 一濟檢問檢索制度의 改善方案	159
1. 警察組職間 役割調整과 協力 네트워크 구축	159
2. 戰略的, 問題解決 指向的 檢問檢索 強化	160
3. 地域治安 特性에 適合한 檢問檢索戰略	162
第4節 不審檢問檢索 裝備의 尖端化, 高度化	163
1. 基本方向	163
2. 無電機 通信 體系 改善	164
3. 巡察車 컴퓨터 단말기(M.D.T) 改善 및 擴大實施	165
4. 車輛番號自動判讀시스템 改善 및 擴大 實施	166
5. 照會用 컴퓨터 性能 向上 및 擴大設置	166
6. 携帶用 朝會 컴퓨터 시스템 開發 및 適用	166
第5節 國民과의 協力關係 形成	167
1. 警察官의 不審檢問方法과 行態變化	167
2. 積極的인 弘報	168
第6節 不審檢問制度에 관한 立法論	168
1. 일체(一切)검문	169
2. 停止를 위한 實力行事	169
3. 소지품검사에 있어서 外表檢査와 開披行爲	170
4. 흉기이외의 물건에 대한 所持品檢査	170
5. 自動車檢問	171
6. 住民登錄法上 身元確認을 위한 同行要求	171
 Ⅷ. 맺는 말	 173
 參考文獻	 176
 설문지	 180

표 목 차

〈표 1〉 M.D.T 활용실적	109
〈표 2〉 1995년도 경찰컴퓨터 단말기 처리실적	113
〈표 3〉 경찰서의 월별 온라인 조회 통계	114
〈표 4〉 1996년 2월 파출소별 컴퓨터 단말기 처리실적	114
〈표 5〉 1996년 5월 파출소별 컴퓨터 단말기 처리실적	115
〈표 6〉 불심검문 조회 소요시간(빠른 경우)	117
〈표 7〉 불심검문 조회 소요시간(정상시 보통)	117
〈표 8〉 불심검문 조회 소요시간(느린 경우)	118
〈표 9〉 최근 1달동안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 고장 장애 건수	120
〈표 10〉 최근 1달동안 무전기 고장 장애 건수	121
〈표 11〉 기존 통신방식과 주파수 공용통신 방식 비교	123
〈표 12〉 지방경찰청 일제검문검색 운영실태	128
〈표 13〉 일제검문검색의 효과	129
〈표 14〉 비번인 경우 일제검문검색 참여	130
〈표 15〉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응 행태	134
〈표 16〉 피검문자가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응 행태	135
〈표 17〉 몸수색 실시 정도	135
〈표 18〉 소지품 수색 실시 정도	136
〈표 19〉 피검문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제시 실시정도	137
〈표 20〉 피검문자에게 불심검문이유 설명정도	138
〈표 21〉 임의동행의 실시횟수	139
〈표 22〉 최근 6개월간 피검문자 임의동행 사례	139
〈표 23〉 피검문자 흥기소지시 강력대응횟수	140
〈표 24〉 피검문자 흥기소지시 임의동행	141

〈표 25〉 피검문자 흥기소지시 경찰관 총기사용금지	141
〈표 26〉 피검문자 흥기소지시 먼저 보고하고 사후조치를 기다림	142
〈표 27〉 한달 동안 불심검문 실시건수	143
〈표 28〉 순찰 때마다 최소 1건 이상 실시	144
〈표 29〉 순찰시 불심검문을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144
〈표 30〉 하루에 몇 건 이상 불심검문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145
〈표 31〉 불심검문 피검문자 선정 연령별 구분	146
〈표 32〉 불심검문 피검문자 선정 성별 구분	146
〈표 33〉 불심검문에 대한 검문자의 협력정도평가	148
〈표 34〉 불심검문중 피검문자와의 갈등 정도 : 말다툼을 하는 정도	148
〈표 35〉 불심검문의 이유와 경찰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	149
〈표 36〉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한 피검문자의 협력정도	149
〈표 37〉 소지품 검사에 대한 피검문자의 협력 정도	150
〈표 38〉 몸수색에 대한 피검문자의 협력 정도	150
〈표 39〉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피검문자의 협력정도	151
〈표 40〉 불심검문의 범죄검거효과	152
〈표 41〉 불심검문의 범죄예방효과	153
〈표 42〉 범인검거효과와 범죄예방효과	153
〈표 43〉 일제검문검색효과와 범인검거효과	154
〈표 44〉 일제검문검색효과와 범죄예방효과	154
〈표 45〉 6개월동안 불심검문으로 인한 범인검거건수	155
〈표 46〉 불심검문검색제도의 문제점	156
〈표 47〉 근무시간에 따른 탄력적 경력 운용(예시)	162

第2節 英 國

영국은 1970년대에 범죄의 급격한 증가가 시급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치안대책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인 하나로서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불심검문에 있어서 경찰관의 권한을 명백히 할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었으나, 1982년이 되어서야 「警察 및 刑事證據法案」(Police and Criminal Evidence Bill)이 의회에 제출되고 兩院의 심의를 거쳐 「1984년법」으로 확정되어 1986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이 법의 운용규정인 「경찰관에 의한 정지 및 수색권행사에 관한 운용규정」(Code of Practice for the Exercise by Police Officers of Statutory Powers of Stop and Search)이 1985년에 의회를 통과하여 1984년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1984년법」 제1편에서는 경찰관에게 공공장소 등에서 逮捕節次에 의하지 않고 사람 또는 차량을 정지·억류하여 盜品 또는 禁製品(prohibited articles)을 수색할 권한과 중대사건의 범인발견 등을 목적으로 한 車輛檢問權을 부여하였다. 동시에 이를 권한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경찰관이 가지는 정지·수색의 권한 행사에 대한 실차적 규제조항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제2편의 규정과 1984년법 제66조a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운용규정」에 의하여 보충되어 있다.

가. 停止·搜索의 權限

경찰관은 盜品 또는 禁製品이 발견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제1조제3항)에는 공공장소 등에서 그러한 이유가 존재하는 모든 사람 또는 차량을 抑留(detain)하고, 그 사람 또는 차량상에 소재하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도둑 또는 금제품을 수색할 수 있다(동제2항). 수색과정에서 도둑 또는 금제품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이것을 押收할 수 있다(동제6항).

a) 合理的 嫌疑(reasonable suspicion)

이것은 어디까지나 증명의 문제가 아닌 혐의의 문제로서 확신(certainty)이나 합리적 의심을 능가하는 정도의 嫌疑(beyond reasonable doubt)까지는 필요없지

만, 경찰관의 직감이나 육감에 의한 단순한 의혹으로서서는 불충분하고 특정 개인에 관하여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서도 고려·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혐의이어야만 한다(규정 부칙 B-1).

그 판단은 대상자의 소지품(현재 목격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지혐의만 있는 경우도 포함)의 性狀, 시각이나 장소, 대상자나 같이 있는 자의 거동 등, 여러 사정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지만, 合理的 嫌疑를 근거지우는 사실은 대상물이 발견될 것이라고 하는 蓋然性(likelihood)이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일반인이 요구하는 정도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고, 주의 깊은 경찰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이러한 개연성을 인정할 때에는 그 당시에 인식한 상황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대상자의 行狀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용의자의 특징에 대한 정보 등도 고려할 수 있다(동 B-2).

그러나 대상자가 어떤 종류의 범죄를 범하려는 자들이 비교적 많은 범주(예를 들면, 특정 피부색, 복장, 두발형태)에 속한다고 하는 등, 추상적으로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고 있을 확률이 평균보다 높다거나 그 자가 과거에 어떤 종류의 物品不法所持로서 有罪로 되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적 혐의를 근거지우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한다. 즉 합리적 혐의의 정도는 無令狀逮捕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와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지·수색권에 의하여 체포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검거가 가능하고, 때로는 체포가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합리적 혐의가 존재하는 한 체포권이 없는 경우(체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하여는 성명미상 등의 일정한 요건이 없다면 무영장체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에도 정지·수색이 가능하다(동 B-5).

또 경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을 억류하지 않고 강제에 이르지 않는 한, 그 자에게 말을 걸거나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 또는 차량을 그 의사에 반해서 정지·억류함에는 사전에 “합리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搜索의 理由를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을 그의 意思에 관하여 정지시키거나 억류해서는 안된다(규정 2.1).

이와 같이 정지 후 수색에 착수하기 전에 그 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문이 대한 대상자의 답변이나 그가 답

변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소급해서 ‘합리적 혐의’를 근거지울 수는 없다(규정 2.2, 2.3). 그렇지만 임의질문인 한 그것에 의하여 합리적 근거를 얻어 수색하고, 그 동안 수색을 위하여 억류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준비적 질문은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필요한 수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단한 회화는 바람직하다고 한다(지침 2A).

그러나 수색을 하기 위하여 억류했지만 그 후 수색이 필요없게 되거나, 수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수색하지 않아도 되고(제2조 1항), 수색 착수 전에 질문하여 혐의가 소멸한 경우에는 수색이 금지된다(규정 2.2).

그러나 당초에 혐의가 존재했던 한, 당해 억류가 소급적으로 違法이 되는 것은 아니다(지침 2A).

b) 搜索의 目的物

수색의 목적물은 盜品 또는 禁製品이다. “금제품”에는 다음의 3종류가 있다.

(i) 공격용 무기(offensive weapon)

여기에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것(본래적 내지 성질상의 흉기)”뿐만 아니라 “그 소지자에게 있어서 자기 또는 타인이 상기의 목적으로서 사용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소위 用法上の 흉기)”도 포함된다(동제9항).

그러나 후자에 있어서는 경찰관이 소지자의 의도에 대하여도 합리적 혐의를 가져야만 하므로 현실로는 이미 그것이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었던가, 확실히 그 같이 사용되려 하고 있다는 외관적인 정조가 없는 한, 정지·수색권은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i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不法目的의 住居侵入(burglary). 절도·자동차 등의 無權限使用 혹은 欺罔에 의한 財物取得犯罪過程에 있어서, 또는 이들 범죄와 관련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것과 그 소지자에게 있어서 자기 또는 타인이 상기의 목적으로서 사용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동제7, 8항).

(iii) 刑事司法法(1988년) 제139조의 범죄(단, 당해범죄가 이미 범하여졌거나, 범하여지고 있거나, 확실히 범하여지려고 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에 관련되

는 대상물<동제8항>.

c) 停止·搜索場所

정지·수색권은 (i) 그 “시점에 있어서 공중 또는 그 일부(the public or any section of the public)가 요금의 지급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써 權利 또는 명시 혹은 묵시의 許可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공개장소) 외에 (ii) “사람들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출입이 용이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住居는 제외된다<제1조제1항>.

또 그것이 “주거에 부속하여 점유되거나 동시에 당해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원 혹은 圍繞地… 그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색할 수 없지만, 대상자 내지 대상차량의 관리자가 당해 주거의 거주자가 아니거나, 대상자 내지 대상차량이 “당해 주거 거주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허가”없이 그 장소에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동제4, 5항>.

한편 대상자가 권한을 가지고 그 장소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그 후에 수색을 適法으로 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를 정지시키고, 나아가 억류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강제력의 행사도 허용된다)<규정 2.1>.

d) 搜索이 미치는 범위

수색은 사람의 신체, 차량, 차량의 내부 또는 상부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고, 그 수색을 위하여 사람 또는 차량을 억류할 수 있다<제1조제2항>. 다만 수색을 위한 사람 내지 차량의 억류시간은 “억류를 개시한 장소 또는 그 가까운 주변에서 수색을 완수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에 한정된다<제2조제8항>.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着衣 外表에 대한 수색은 통상적으로 거의 1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한다<지침 3A>.

그리고 수색의 범위나 정도는 목적물이나 대상자에 의하여 좌우되지만, 합리적 혐의의 내용으로서 목적물이 명백히 대상자의 신체의 특정부분(예를 들면, 주머니 등)에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수색할 수 있다<규정 3.3>. 또 당초의 혐의에 관련된 대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색과정에서 다른 盜品 등의 소지혐의가 생긴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색이 개시되고, 합리적 근거가 있

는 한 계속해서 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듯 하다.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수색은 着衣의 外表檢査에 그쳐야 하고(규정 3.5), 대상자에게 옷(외투·상의·지갑을 제외하고)을 벗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제2조제9항a).

만약 옷을 벗겨서 수색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警察車內나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서 등,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이 때에는 대상자와 同性의 경찰관에 의하여 異性이 없는 곳에서 실시되어야만 한다(구두.양말 등 신는 것은 제외)(규정 3.5, 지침 3A). 이 때 자발적으로 T셔츠나 모자 등, 외투 이상의 着衣를 벗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

車輛搜索은 현재 사람이 없는 차량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2조제6항). 또 차량에 관한 규정은 선박(물 위에 떠있는 建造 또는 改造된 모든 것을 포함)(제118조), 항공기 및 hovercraft에도 적용된다(제2조제10항).

나. 搜索에 관한 適正節次의 保障

정지·수색권은 책임있고 신중하게, 더욱이 혐의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나친 권한행사는 그 오용과 같이 장기적으로 보아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므로 수색대상으로 되는 자를 정중하고 신중히 처우하도록 하고 있다(지침 1A).

a) 搜索 着手前의 節次

車輛의 停止權은 원칙적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한정된다(제2조 제9항b). 만일 경찰관이 제복을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색 착수 전에 대상자 내지 대상 차량의 관리자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다음, (i) 자신의 성명, 소속경찰관서명 (ii) 수색목적물 (iii) 수색이유 및 (iv) 수색기록의 사본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한다(제2조 제2, 3항; 규정 2.5).

다만 사람이 현재 없는 車輛搜索에 있어서는 위의 告知가 필요없다(동제5항). 또 기록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이 권리를 告知하지 않아도 좋다(동제4항, 제3조제1항). 그리고 그 고지에 따라 곧 대상자로부터 교부 요구가 있었지만 그 장소에서 사본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자에게 어느 경찰관서에

청구하면 교부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규정 2.6>.

영어능력의 결여 등에 의하여 고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는 경찰관은 그 자와 같이 있는 자에게 통역을 의뢰하는 등, 그 자에게 고지사항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규정 2.7>.

그리고 일단, 사람 또는 차량을 정지시킨 후에도 대상자에 대한 질문의 결과, 혐의가 해소되었던가, 그 외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색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관이 수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제2조 제1항>.

b) 搜索時의 節次

경찰관은 수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합리적인 實力”(reasonable force)을 행사할 수 있다<제117조>.

그러나 먼저 당해 소지품이 자발적으로 제출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규정 부칙B-5>. 強制的 搜索은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협력할 의사가 없음이 판명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규정 3.2>. 또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규정 3.1>.

c) 搜索 終了後의 節次

경찰관이 수색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書面에 의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제3조 제1항>. 이 기록은 搜索 終了後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해야 하고, 위급한 직무가 있다든가, 악천 후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색한 장소에서 작성해야 한다<동제2항, 규정 4.2>. 다만 실행불가능한 때에는 그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제3조 제1항 단서>. 예컨대, 연휴 때 해변에서 청소년 집단의 소란이나 축구장 내에서 관중끼리의 난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통행인이나 관중을 대상으로 수색을 행하는 경우 등이다<규정 4.1>.

또 이 의무는 경찰관이 권한에 의하여 행하는 수색에 대한 것으로,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의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동장이나 그외의 가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또는 입장 조건으로서 행하는 통상의 수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동제1항, 지침 4A>.

위 기록에는 (i) 대상자의 성명(그것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그 자를 특징지우는 사항) 내지 대상차량을 특징지우는 사항 (ii) 수색목적물 (iii) 수색이유(대

상자의 행동 또는 그 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대상자에게 혐의를 품었던 이유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규정 4.7) (iv) 수색한日時 (v) 수색한 장소 (vi) 발견된 물건의 유무 및 발견된 물건이 있었던 때는 그 물건 (vii) 수색의 결과 생긴 사람 또는 재물에 대한 손상의 유무 및 그 내용 (viii) 당해 기록을 작성한 경찰관 및 수색에 관여했던 경찰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조 제3-6항). 이 때 수색이 복수의 경찰관에 의해서 행하여진 때에는 그것에 종사했던 모든 경찰관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한다(지침 4).

또 위 기록에는 대상자의 성명 외에 주소 및 생년월일도 기재할 것이 요구되지만 대상자가 그들 사항을 명백히 할 의무는 없고, 경찰관도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억류할 수는 없다(제3조 제3항, 규정 4.4). 단 수색 이유는 간접하게 그러나 — — — 대상자의 거동이나 그 외의 합리적 혐의를 근거지우는 사정을 적시하는 것에 의하여 — — —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규정 4.6). 이 외에 대상자가 백인, 아프리카의 카리브계, 아시아계인 경우에는 그것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규정 4.5).

만약 대상차량의 관리자 등이 그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수색종료 후 수색을 했던 것, 당해 경찰관의 소속경찰관서명, 그 수색에 의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警察署에 補償을 청구할 것 및 수색기록사본의 청구권 등, 기록에 대한 대상자의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당해 차량내부에 남기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제6, 7항).

이상의 기록작성은 「全國共通搜索錄」(national search record)이라고 하는 통일서식에 따라야 하며(규정 4.3), 수색대상으로된 개개의 사람 및 차량마다 1통씩 작성하여야 한다(규정 4.7). 또 수색기록이 작성된 때에는 대상자 내지 대상차량의 소유자 또는 수색시의 관리자는 수색이 행하여진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3조 제7-9항).

그리고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이 기록에 근거하여 각 연도 내에 행해졌던 수색의 목적물의 종류(도품, 공격용무기 그 외의 금제품)마다의 월별 총수 및 그 수색 결과 체포된 자의 — — — 이것도 수색목적물의 종류마다 — — — 월별 총수를 年次報告書로서 명백히 하여야 한다(제5조).

第3節 獨 逸

독일에 있어서 신원확인 등 불심검문에 관한 경찰관의 職務活動은 그 목적에 따라 法的 根據를 달리하고 있다. 즉 犯罪 “豫防”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各州의 경찰법(Polizeirecht) 또는 一般秩序法(Allgemeines Ordnungsrecht)을 근거로 하고, 犯罪 “鎮壓”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근거로 하여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행해지고 있다.

종래에는 各州마다 독자적인 경찰법을 갖고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서 경찰관의 임무를 보다 명확히 규율하기 위하여 聯邦統一警察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이 1977년 11월 25일 各州의 內務부장관의 議決에 의해 만들어진 「聯邦과 各州의 統一警察法 模範草案」(Musterentwurf eines einheitlichen Polizeigesetzes des Bundes und L nder, ME)이다.

各州는 이 초안을 통하여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警察職務에 관한 근거규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바이에른(Bayern)州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州에서는 광범위하게 이 초안을 따르고 있다. 이 模範草案은 경찰관의 身元確認, 召喚, 保護措置에 관한 規定을 담고 있다.

1. 統一警察法 模範草案에서의 不審檢問制度

가. 身元確認

경찰관은 다음의 경우에 경찰에 의하여 마련된 통제장소 등에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제9조제1항). 즉 (i) 危險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ii) 그 사람이 아래에 열거한 장소에 있을 경우 a) 제반사실을 고려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aa) 범죄의 예비, 음모, 실행행위 bb) 필요한 체류허가없이 회합하는 행위 cc) 범죄인의 도피행위 b) 며춘부의 뒤를 따르는 행위, (iii) 사람이 교통시설, 구호시설 및 공공교통수단, 공공건물 또는 그 외의 특히 위험한 목적물(Object) 안이나 이에 인접한 곳에 머물고 있고, 제반정

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종류의 목적물 안이나 이에 인접한 곳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이러한 목적물 안이나 인접한 곳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 목적물 자체가 직접적으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될 경우, (iv) 경찰에 의하여 설치된 검문소에서 형사소송법 제100조a 또는 集會法(Versammlungsgesetz)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행을 막기 위한 경우 등이다.

이 때 경찰관은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은 특별한 경우 당해인(Betroffen)을 停止시켜서 그의 人的事項에 대하여 질문하고, 검사하기 위하여 휴대한 身分證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身元確認이 안되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인을 留置(festhalten)할 수 있으며, 이 때 경찰관은 제3문의 전제조건하에 당해인 및 휴대품을 搜索(durchsuchen)할 수 있다(동제2항). 그리고 당해인이 법령의 規定에 따라 資格證을 휴대하도록 의무지워져 있을 때에는 檢査하기 위하여 資格證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동제3항).

또 경찰은 (i) 제9조에 따라 허용되는 身元確認이 다른 방법으로는 不可能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ii) 당해인이 형벌이 부과될 행위를 개시할 혐의가 있고 행위의 수단과 수행을 통하여 볼 때 반복의 위험이 있어서 범죄예방적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鑑識措置(Erkennungsdienstliche Maßnahmen)를 취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즉, a) 지문과 掌紋의 채취 b) 사진촬영 c) 외형적 신체특정의 확인 d) 測定(Messungen)이다(동제3항). 그러나 전술한 제1항의 요건이 없으면 당해인은 감식자료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동제2항).

나. 召喚과 留置

當該人이 부과된 경찰인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용한 陳述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데 또는 鑑識措置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경찰은 문서 또는 口頭로 사람을 召喚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이 때 경찰관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하며(동제2항), 당해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않으면, a) 陳述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b) 鑑識措置의 실시를 위한 경우에 強制로 소환할 수 있다(동제3항).

나아가 경찰은 현저히 위험한 범죄 또는 秩序遠反行爲가 면전에서 행하여지거나 계속되고 있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 사람을 抑留(Gewahrsam)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제2호)

위 條項들(제9조 제2항, 제3항, 제11조 제3항, 제13조)에 의하여 어떤 사람이 留置되면 경찰은 지체없이 自由剝奪(Freiheitsentziehungen)의 허가과 계속에 대하여 그 사람이 留置된 지역의 區法院判事の 決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결정이 警察措置의 근거가 소멸된 후에 내려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제14조).

또 이 때 경찰관은 유치된 자에게 지체없이 留置事由를 告知해 주어야 하며, 자유박탈의 목적이 상실될 위험이 없는 한 유치된 자에게 지체없이 가족 또는 그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에 의한 자유박탈시에도 이 통지의무는 존재한다. 다만 피유치자가 통지할 수 없고 피유치자의 추정적 의사에 상반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관이 그 통지의무를 진다. 또 피유치자가 미성년자, 禁治產者 또는 일시적 후견상태하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의 保護義務者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5조 제1, 2항).

그리고 유치한 때에는 피유치자의 동의없이 既決囚 또는 未決囚와 같은 방에 수용해서는 안된다. 남녀는 분리수용되어야 한다. 피유치자에게는 자유박탈의 목적이나 유치상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만이 허용된다(동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被留置者를 석방하여야 한다. a) 警察措置의 사유가 소멸된 즉시 b) 자유박탈의 계속이 법관에 의하여 不許決定된 경우 c) 법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자유박탈의 계속을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유치는 늦어도 체포 다음 날 종료시(제16조).

2. 刑事訴訟法上的 檢問과 身元確認

독일에서는 형사소송법상 身元確認을 위한 檢問, 搜索 등의 措置와 拘束을 인정하고 있다. 즉 刑事訴訟法 제111조 제1항에서는 테러단체의 조직에 관한 罪(형법 제129조a)나 重強盜(형법 제250조 제1항)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혐의

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해서나 범행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證據方法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상, 광장 및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 檢問所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누구든지 檢問所에서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가 휴대한 물건에 대한 搜索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檢問소의 설치명령은 법관이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 및 그의 助務官(법원조직법 제152조)이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동제2항).

또 제163조b 제1항에서는 어떤 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 및 警察職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혐의자(Verd chtiger)는 소환에 앞서 검사 앞에 출두할 의무를 지며, 경찰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최초의 訊問에 앞서서 혐의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혐의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없거나, 신원 확인이 현저히 어려운 때에는 혐의자를 留置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혐의자의 신체와 그가 소지한 물건의 수색 및 鑑識措置가 허용된다.

나아가 동제2항에서는 범죄의 해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犯罪嫌疑가 없는 자의 신원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訊問前에 경찰공무원은 조사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건의 중요성과 비례가 유지되지 않는 때에는 前述한 留置는 할 수 없으며, 당해인의 의사에 반하는 한, 신체와 소지품의 수색 및 鑑識 措置도 행할 수 없다.

그리고 신원확인 대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기간 이상 유치될 수 없다. 판사의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신원확인에 필요한 시간보다 長期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치된 자의 자유박탈의 허용과 계속 여부에 관한 裁判을 위하여 그가 留置된 구역의 區法院判事에게 즉시 引渡하여야 한다(제163조c 제1항). 다만 신원확인을 위한 자유박탈은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제3항).

또 유치된 자는 지체없이 가족 또는 그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 통지의 기회는 유치된 자에게 犯罪의 嫌疑가 있고 그 통지로 인하여 수사의 목적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된다(동제2항).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163조b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폐기하여야 한다.<동제4항>.

현장에서 직무집행시에 이를 지휘하는 공무원은 그의 職務活動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 또는 그의 권한에 의하여 發한 명령에 저항하는 자를 拘束하고, 그 職務行爲가 종료할 때까지 유치할 權限이 있다. 그러나 이 留置는 晝日을 초과할 수 없다<제164조>.

第 4 節 프랑스

종래 프랑스에서는 明文規定이 없었지만 실무상으로는 警察搜查段階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搜查에 필요한 시간 동안, 때로는 수일에 이르기까지 拘束하는 것이 상례였고, 누구도 이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피의자의 인권보장 못지 않게 범죄로부터의 사회보호, 수사의 合目的性, 機動性에 큰 비중을 둔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사회혼란과 불안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 「Law and Order 입법」이 1981년 2월 2일에 제정(법률제81-82호)되어, 종래의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것은 종래 법률의 근거없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었던 身元確認目的의 停止와 留置를 질서유지, 특히 粗暴犯豫防과 적발을 위하여 容疑者, 參考人을 묻지 않고 허용하는 법률이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절도있게 경찰서로 연행하여 사람의 身元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 1958년의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관계있다고 보여지는 거동수상자를 신문하기 위한 유치를 인정하였었다. 이 절차는 grade ä vue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경찰관의 24시간 留置를 인정하였고, 경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24시간 연장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 권한 또한 위 법률에 의하여 확장되었었다.

1. 身元確認

「Law and Order 입법」에 의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또는

신원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163조b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폐기하여야 한다.<동제4항>.

현장에서 직무집행시에 이를 지휘하는 공무원은 그의 職務活動을 고의로 방해하는 자 또는 그의 권한에 의하여 發한 명령에 저항하는 자를 拘束하고, 그 職務行爲가 종료할 때까지 유치할 權限이 있다. 그러나 이 留置는 晝日을 초과할 수 없다<제164조>.

第 4 節 프랑스

종래 프랑스에서는 明文規定이 없었지만 실무상으로는 警察搜查段階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搜查에 필요한 시간 동안, 때로는 수일에 이르기까지 拘束하는 것이 상례였고, 누구도 이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피의자의 인권보장 못지 않게 범죄로부터의 사회보호, 수사의 合目的性, 機動性에 큰 비중을 둔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사회혼란과 불안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 「Law and Order 입법」이 1981년 2월 2일에 제정(법률제81-82호)되어, 종래의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것은 종래 법률의 근거없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었던 身元確認目的의 停止와 留置를 질서유지, 특히 粗暴犯豫防과 적발을 위하여 容疑者, 參考人을 묻지 않고 허용하는 법률이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절도있게 경찰서로 연행하여 사람의 身元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 1958년의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관계있다고 보여지는 거동수상자를 신문하기 위한 유치를 인정하였었다. 이 절차는 grade ä vue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경찰관의 24시간 留置를 인정하였고, 경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24시간 연장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 권한 또한 위 법률에 의하여 확장되었다.

1. 身元確認

「Law and Order 입법」에 의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또는

사법경찰관의 책임하에 司法警察吏 및 補助司法警察吏)은 (i) 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범할 우려가 있는 자 (ii) 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iii) 사법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수색대상으로 된 자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78조 제2항), 그리고 공공질서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신원을 명백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동제1항). 또 被確認者의 신원이 명백히 될 때까지 24시간까지 유치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그리고 이 留置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輕罪의 刑(10일 이상 3월이하의 구금 및 1200프랑 이상 2000프랑 이하의 벌금)이 과하여진다(동제3항)

이 후 이 법은 1983년 6월 10일의 개정에서 신원확인 대상자를 “현행범 또는 수사상 필요”라고 하는 요건으로 개정하였고, 다시 1986년 9월 3일의 개정에서 “공공질서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불명확한 요건을 “개인 또는 재산의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1986년 12월 3일의 개정에서는 “임박한 위협” 대신에 “개인 및 재산의 안전침해”라고 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였다.

한편 법원은 신원확인을 엄격히 규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984년 10월 4일 판결에서 破棄院刑事部는 지하철 역에서의 경찰에 의한 신원확인에 대하여 “지하철 내에서 폭력사건이나 소매치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이 특별히 감시를 강화했던 것”을 이유로 “임박한 위협”을 인정한 파리 상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명확성을 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破棄選送하였다.¹⁵⁴⁾

그러나 憲法評議院은 1986년 8월 26일의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이 身元確認條文이 合憲이라고 하였다. 즉 “헌법상 자유의 행사, 범죄인의 수색 및 공공질서에 대한 요청은 모두 헌법의 기본권으로부터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상호간에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 사법부 및 행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諸規則이나 보장을 완전히 이행해야만 한다.”고 하였다.¹⁵⁵⁾

154) 佐藤美樹, “シンシア・ブルーム 「フランス及びアメリカにおける警察の捜査段階での個人の自由」”, 關西大學大學院, 《法學ジャーナル》 54, 1989.9, 70面 참조.

155) 앞의 번 참조.

그리고 입법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경찰에 대한 법적 제한을 제거했다면, 형사법원은 경찰에게 신원확인을 위한 보다 큰 자유재량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하였다.¹⁵⁶⁾

2. 留置(garde à vue)

留置는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로서, 오래 전부터 경찰관에게 留置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이 허용되고 있었다. 즉 경찰은 예비수사를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留置를 할 수 있었다(형사소송법 제63조).

이 留置措置는 사법경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때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도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24시간 留置할 수 있다(동제1항). 즉 범행현장에 있는 자나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까지도 24시간 抑留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억류된 자는 누구에게 통지하거나 변호인의 助力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被留置者의 가족의 청구가 있는 때에 지명된 의사에 의하여 진찰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동제4항).

그러나 이러한 留置는 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다. 즉 被留置者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경찰의 신문을 받으며, 왕래의 자유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법관에게 예정되어 있는 강력한 권한이 이 절차에서는 경찰의 권능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留置에도 그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절차상의 보호가 존재한다. 즉 留置는 檢事의 감독을 받고, 사법경찰관은 被留置者에 대한 訊問調書(proc sverbal d'audition)와 留置된 경찰서에 특별히 비치된 장부 및 경찰관서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陳述記錄簿(carnet de d'claration) 등에 訊問期間과 신문도중의 휴식시간, 留置한 일시 및 석방 또는 관할법관에게 引致한 일시와 留置理由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재시에는 欄外에 관계인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

156) 앞의 면 참조.

야 하며, 서명을 거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형소법 제64조 제1, 2, 3항, 제65조, 제78조).

또 예비수사의 필요상 24시간 이상을 留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同期間의 만료 전에 검사에게 引致해야만 하고, 이 때 검사는 인치된 자를 신문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留置를 24시간 연장하는 許可狀을 발부할 수 있다(형소법 제63조 제3항, 제77조 제1, 2항).

그리고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被留置者는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이를 被留置者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나아가 이 告知事實을 調書에 기재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확인·서명하도록 해야 한다(형소법 제64조 제5항, 제77조 제3항). 이 告知義務 등은 최초의 留置時에 있어서도 準用된다(형소법 제63조 제4, 5항).

만약 경찰관이 留置를 남용하여 월권을 한 때에는 懲戒 등의 制裁를 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 被留置者가 相對訴訟(action en prise partie)을 통해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¹⁵⁷⁾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보호는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留置에 대한 檢事의 감독도 실제로는 최소한에 그치며, 적어도 최초의 24시간 동안 경찰관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 의사의 진단을 받을 권리의 告知義務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검사의 面前에 被留置者가 引致되지 않더라도 이유를 불인 결정에 의하여도 유치기간을 24시간 연장할 수 있다(형소법 제77조 제4항).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제재도 경찰의 월권행위에 대한 방지책이 거의 되지 못할 것이다. 경찰관에 대한 起訴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판례도 경찰관의 職權濫用罪의 성립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¹⁵⁸⁾

당시 종포화하는 범죄수법에 대항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효율을 보장하라는 여론을 반영하여 제정된 1981년 2월 2일의 법률은 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

157) 강봉욱, 앞의 책, 128면 참조.

158) 앞의 책, 129면 참조.

향으로 나아갔다. 즉 수사상 필요한 경우로서 형법 제341조 제1, 2항, 제342조 내지 제344조 및 제355조에 정하는 人身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경우 또는 제384조에 정하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무기를 휴대하고 절도한 경우에는 留置期間인 48시간을 초과하여 다시 24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이다(형소법 제63-1조 제1항, 제77-1조). 연장시에는 경우에 따라 豫審判事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地方法院長(ie pr sident du tribunal) 또는 受命判事(ie juge délégué)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 때 경찰관은 被留置者를 유치현장에서 同判事 앞에 출두시켜야 한다(형소법 제63-1조 제2항). 그리고 유치를 48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예심판사가 의사를 지명하여 즉시 피유치자를 진찰하고, 의료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이를 조서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에 위반한 절차는 무효가 된다(형소법 제64-1조, 제77-1조 제2항).

만일 유치규정의 위반 즉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규정된 형식을 위반하거나, 실질적인 형식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被棄申請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상 유치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 증명은 당사자에게는 극복하기 극히 어려운 장애가 될 것이다.¹⁵⁹⁾

심지어 職權으로 그같은 위법을 증명한 법원도 …破棄院을 포함하여…모두 다 그 위법성이 사건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만 무효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형소법 제802조) 결과적으로 위법한 유치에 거의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3. 所持品檢査

프랑스법에 있어서는 사람의 외관 또는 거동에 의하여 경찰의 의심을 야기시킨 자의 身體搜索(fouille a corps)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가는 명백하지 않다.

159) 佐藤, 앞의 글, 83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수색은 가택수색과 같아야 하고, 따라서 가택수색 자체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체수색도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한편 사법경찰관이 가택수색의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신체를 수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혐의만으로는 그 범죄가 현행범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포 및 신체수색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예심판사의 승인이 없으면 競馬不正賭金을 모으거나, 不法武器携帶의 의심이 있음에 지나지 않는 자를 노상에서 체포하거나 신체수색할 수 없다고 한다.¹⁶⁰⁾

한편 適法하게 체포된 자의 신체수색은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기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被留置者도 피체포자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수색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903년 5월 20일 명령 제307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重罪犯人 또는 현행범으로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고 유치된 자를 검사에게 引致하기 전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또는 진실을 명백히 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색해야만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경찰에게 허용된 소지품검사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지만, 사법경찰권행사의 범위내에서 자신의 안전확보와 증거수집을 위한 소지품검사는 허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第 5 節 日 本

1. 警察官職務執行法과 職務質問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警察制度의 개혁은 미국 점령군의 강력한 추진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일본국민의 입장에서는 전쟁 이전의 全體主義 法體制下에서 治安警察法(明治33年 法36)과 行政執行法(明治33年 法84)에 의한 불심검문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생생한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160) 강봉욱, 앞의 책, 130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수색은 가택수색과 같아야 하고, 따라서 가택수색 자체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체수색도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한편 사법경찰관이 가택수색의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신체를 수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혐의만으로는 그 범죄가 현행범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포 및 신체수색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예심판사의 승인이 없으면 競馬不正賭金을 모으거나, 不法武器携帶의 의심이 있음에 지나지 않는 자를 노상에서 체포하거나 신체수색할 수 없다고 한다.¹⁶⁰⁾

한편 適法하게 체포된 자의 신체수색은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기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被留置者도 피체포자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수색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903년 5월 20일 명령 제307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重罪犯人 또는 현행범으로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고 유치된 자를 검사에게 引致하기 전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또는 진실을 명백히 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색해야만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경찰에게 허용된 소지품검사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지만, 사법경찰권행사의 범위내에서 자신의 안전확보와 증거수집을 위한 소지품검사는 허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第 5 節 日 本

1. 警察官職務執行法과 職務質問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警察制度의 개혁은 미국 점령군의 강력한 추진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일본국민의 입장에서는 전쟁 이전의 全體主義 法體制下에서 治安警察法(明治33年 法36)과 行政執行法(明治33年 法84)에 의한 불심검문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생생한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160) 강봉욱, 앞의 책, 130면.

1947년 12월 8일에 제정되고 1948년 3월 6일부터 시행된 日本의 警察法(昭和29年, 法162)은 地方分權과 民主的 管理를 2개의 축으로 하여 警察組織과 機構를 개혁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職務權限의 범위에 관한 법률로서 1948년 7월 12일 「警察官職務執行法」(昭和23年 法136)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行政執行法을 중심으로 하는 舊法制度를 토대로 하되 이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외국법, 특히 미국의 統一逮捕法(1942년)을 참고로 하여,¹⁶¹⁾ 警察權의 행사를 대폭 규제하고자 엄격한 규정을 많이 설정하였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과거 行政執行法의 豫防檢束, 물건의 假領置 등을 폐지하는 한편, 保護檢束, 出入 등을 존치시키되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절차를 신중히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不審檢問에 대신하여 “職務質問”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¹⁶²⁾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警察官職務執行法 제2조〔質問〕

- ① 경찰관은 이상한 舉動 기타 주위의 事情으로부터 合理的으로 판단해서 犯罪를 범하거나 또는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함에 충분한 相當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혹은 범죄가 행하여지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不利하거나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그에게 부근의 警察署, 派出所 또는 駐在所에 同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前2項에 규정하는 자는 刑事訴訟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限, 身柄이 拘束되거나 또는 그 意思에 反해서 警察署, 派出所 혹은 駐在所에 連行되거나 또는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④ 경찰관은 刑事訴訟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逮捕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체에 대하여 凶器를 소지하고 있는가 여부를 調査할 수 있다.

161) 日本 第二國會 制定法審議要錄, 431面.

162) 따라서 일본에서는 不審檢問이라는 용어 대신에 職務質問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統一逮捕法 제2조와 유사한데, 전술한 統一逮捕法이 강제적인 stop and frisk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職務質問은 戰前 쓰라린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任意處分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警職法上の 이러한 權限은 오늘날 사실상 비대화되고 있으며, 犯罪搜查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任意處分이라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職務質問에 있어서 종종 實力行使는 물론, 명문의 규정이 없는 所持品檢査나 自動車檢問조차 행하여지고 있다고 한다.¹⁶³⁾

2. 警察官職務執行法과 警察法 제2조 제1항

일본 警察法 제2조 제1항은 “경찰은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임하고, 범죄의 豫防·鎮壓 및 搜查, 被疑者逮捕, 交通團束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맡는 것을 그 責務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에 따라 警職法에 대한 해석, 나아가 警職法上の 職務質問의 法的 性格이나 解釋(특히 所持品檢査와 自動車檢問에 관한 해석)에 대하여도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i) 먼저 警察法을 組織法으로 보고, 위 條項을 포괄적인 권한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은 公權力行使에 임하여 任意手段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써 정한 이외의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警職法은 경찰관이 가지는 수단의 개별규정이고, 경직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¹⁶⁴⁾

그러나 이 견해 가운데서도 警察法 제2조가 職務質問 내지 所持品檢査의 소극적인 법적 근거로는 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¹⁶⁵⁾

(ii) 다음으로 警察法 제2조 제1항을 경찰관이 행사하는 權限의 根據 내지 創設規定(執行權限創設規定)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警職法이 정하는 각 권한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확인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는 警察法에 의한 警察權發動의 정도와 관련하여 다시 입장이 나누어져 있다.

163) 松尾浩也, 刑事訴訟の原理, 東京大學出版會, 1974, 127面.

164) 下村幸雄, “職務質問”, 『判例演習講座 刑事訴訟法』(井戸田 侃 編), 1972, 59面.

165) 阪村幸男, “所持品檢査の法理”, 海上保安大學校 昭和43年度研究報告第1部, 52面.

① 경찰법 제2조 제1항의 責務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即時強制”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¹⁶⁶⁾

② 警察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權限은 상대방의 意思에 反하지 않는 정도의 任意手段임에 그치고, 상대방의 意思에 反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는 직접 그 수단을 정한 개개의 法律條項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입장이다.¹⁶⁷⁾ 이 입장에서는 警職法 제2조가 職務質問과 任意同行이라고 하는 수단 일반에 대하여는 法定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승인할 것을 명백히 하여 警察法 제2조의 警察權限에 대한 制約規定을 國회가 스스로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¹⁶⁸⁾ 그러므로 警察法 제2조를 行政作用에 있어서 任意手段의 행사에 관한 확인적인 성질과 창설적인 성질을 병유하는 규정으로 이해한다. 즉, 경찰관이 任意의 職務質問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찰법 제2조로부터 보아 당연한 것으로 경직법 제2조를 설정할 필요도 없지만, 그 수단으로서 實力(強制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을 행사하여 被質問者를 停止시키는 등의 權限은 警察法 제2조에 의해서 창설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③ 即時強制에 대하여는 法の 明文을 요한다고 하면서, 任意手段과 強制手段의 중간에 “任意도 아니고, 強制도 아닌 중간적인 단계” 내지 “중간적인 實力說得의 단계”를 인정하려고 하는 입장 등이 있다.¹⁶⁹⁾

3. 所持品檢査의 法的 根據

가. 警察官職務執行法 제2조 제4항과 所持品檢査

일본의 현행 警職法에는 職務質問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所持品檢査에 관하여 규정이 없고, 다만 제2조 제4항에서 “경찰관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

166) 竹島久和士, 判例中心 警察權限法解説, 啓正社, 1979, 25, 75, 76面.

167) 渡邊修, 職務質問の研究, 成文堂, 1985, 332面.

168) 앞의 책, 333면.

169) 出射義夫, “自動車檢問の法的根據”, 日沖博士還曆祝賀論文集 過失犯(2), 有斐閣, 1972, 359面.

여 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체에 대하여 凶器의 所持與否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i) 일본 刑訴法 제218조(우리나라 刑訴法 제215조에 해당)의 예외규정으로, 범죄 수사상 身體에 대한 搜査의 일반법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逮捕現場에서는 제220조 제1항 제2호(우리나라 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搜索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凶器의 수색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다.¹⁷⁰⁾

(ii) 逮捕時에 흉기를 빼앗아 逮捕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위 규정은 그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刑訴法 제220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정되는 所持品檢査는 着衣의 외부로부터 접촉하는 정도의 것만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다.¹⁷¹⁾

(iii) 다수설로서 이 규정은 본인 및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는 行政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흉기발견의 強制手段을 정한 것이고, 체포한 경우에는 逮捕現場 또는 그 현장이 아니더라도 身體에 대하여 흉기의 접촉이 가능하지만 실력행사는 당면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하는 견해 등이 있다.¹⁷²⁾

또 所持品檢査와의 관계에서 보자면, 所持品檢査와 警職法 제2조 제4항의 흉기의 搜檢은 목적을 같이하지만, 전자는 檢査의 대상이 넓고 규범적 의의에 있어서 任意行爲로 이해됨에 대하여, 후자는 搜檢의 대상이 凶器에 한정되고 強制行爲인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¹⁷³⁾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 凶器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銃砲刀劍法 제24조의 2에

170) 平場安治, 改訂 刑事訴訟法講義, 1954, 356면.

171) 團藤重光, 條解 刑事訴訟法(上), 1949, 410면.

172) 渡邊, 앞의 책, 362면; 阪村, 앞의 글, 65면以下; 戸基男·宮脇 介, 新版 注解 警察官職務執行法, 立花書房, 1989, 74-75면.

173) 田宮 裕 編, 刑事訴訟法 I, 有斐閣, 1975, 107면.

의해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한다.¹⁷⁴⁾

나. 判例의 태도

判例는 最決 昭29. 7. 15을 매개로 해서 의심이 농후한 경우에 任意의 所持品 檢査라면 허용해도 좋다고 한 이래로 所持品檢査의 適法性을 인정해 오고 있다.

그 法的 根據에 대하여는 (i) 警職法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것¹⁷⁵⁾ (ii) 警察法 제2조에 근거한 것¹⁷⁶⁾ (iii) 兩者를 병기하는 것¹⁷⁷⁾ 및 (iv) 警職法 제2조 제1항과 警察法 제2조를 포함한 法秩序全體의 精神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이 긍정된다고 하는 것¹⁷⁸⁾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最判 昭53. 6. 20(刑集 32. 4. 67)은 所持品檢査를 警職法 제2조 제1항의 職務質問에 부수한 것으로서 인정하면서, 그 許容限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첫째, 職務質問 자체가 適法하고, 所持品檢査가 그 不審事由를 해명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승낙 또는 협력을 얻어서 행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實力行使로 나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상대방의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搜索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행위로서 강제에 이르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所持品檢査의 필요성·긴급성과 그것에 의해서 침해되는 개인의 法益과 權衡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하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相當性判斷은 상대방이 舉殊者인가,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제3자인가, 容疑 犯罪의 종류와 성질(重大性, 危險性), 용의의 정도, 대상물 소지의 혐의 유무와 정도, 대상물의 위험 유무와 정도, 所持品檢査의 장소와 태양, 被質問者의 수와 경찰관측의 태세, 경찰관의 인동과 태도 및 所持品檢査를

174) 田宮, 앞의 책, 114면; 渡邊, 앞의 책, 367면.

175) 東京高判, 昭47. 11. 30, 判例時報 690, 32.

176) 東京地判, 昭48. 10. 21, 判例時報 720, 113.

177) 福岡高決, 昭45. 11. 25, 判例時報 615, 3.

178) 東京地判, 昭50. 1. 23, 判例時報 772, 34.

실시하기까지의 과정과 被質問者側의 대응, 긴급성의 유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서 행하고 있다.

VI. 不審檢問檢索制度의 運營實態

이 연구는 그 동안 불심검문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로 현지조사와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크게 다음 세가지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첫째는 불심검문 경찰관들의 불심검문 행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불심검문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는 불심검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총 650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서울 등 대도시(40개 파출소), 중소도시(40개 파출소), 농어촌지역(20개 파출소)으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650명은 파출소 100개소 400명 (각 개소당 4명씩), 본서외근요원 20개소 200명 (각 개소당 10명씩), 단독검문소 10개소 50명 (각 개소당 5명씩) 등으로 구분된다. 설문조사는 우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총 650명중 625명이 응답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프로그램으로는 S P S 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설문항목은 크게 불심검문에 대한 피검문자의 반응행태, 불심검문 경찰관의 근무행태, 일제검문검색에 관한 사항, 평상시 불심검문의 효과와 실시방법, 불심검문 소요시간 및 장비, 불심검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第 1 節 不審檢問制度의 類型分類

1. 平常時의 不審檢問檢索과 一濟檢問檢索

불심검문검색은 평상시의 불심검문제도와 일제검문검색제도로 구분된다. 평상

시의 불심검문검색이란 외근경찰관이 일상적으로 순찰방법활동 및 형사, 보안, 경비 등의 활동을 수행할 때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검문검색은 주로 파출소와 경찰서 등 일선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일제검문검색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특정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동원하여 중점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제검문검색은 평상시의 검문검색에 비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가시적이며 종합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제검문검색은 검문검색 실시기간에 불심검문검색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종합방법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방법활동이란 특정의 지역이나 범죄 또는 시기에 따라 일관된 계획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방법활동이다.

일제검문검색의 실시범위는 전국, 지방경찰청 관할 구역, 지방경찰서 관할 구역 등 다양하며, 평상시의 검문검색지역보다 좀 더 광역단위에서 실시된다. 이와 같이 일제검문검색제도는 “특정목적”, “일정기간”, “종합검문검색”, “광역단위”, “실시계획수립” 등의 측면에서 평상시의 검문검색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등은 일반적으로 일제검문검색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중단케 하거나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2. 活動目的別 分類

불심검문검색제도는 실시목적에 따라 방법활동, 형사활동, 보안활동, 교통활동, 경비활동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방법활동을 목적으로 한 불심검문검색제도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순찰방법활동의 차원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파출소의 경찰관이 지역의 방법순찰활동을 하면서 불심검문을 시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형사활동을 목적으로 한 불심검문검색은 범인을 검거하거나 단속하기 위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이다. 보안활동을 목적으로 한 불심검문검색은 보안사범단속, 불순분자단속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불

심검문검색을 말한다. 교통활동을 목적으로 한 불심검문검색은 고속도로 행사, 차량일제검문검색, 음주단속 등 교통단속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검문검색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비활동을 목적으로 한 불심검문검색은 경비 및 작전비상경계, 대간첩작전, 경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검문검색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방법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심검문검색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第 2 節 不審檢問檢索의 運營體系

1. 不審檢問檢索의 基本體系

불심검문검색의 주체, 대상 및 관련조직은 다음과 같다. 즉 경찰조직체계, 검문검색 경찰관, 조회체계, 검문검색 장비, 피검문자인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다.

(1) 경찰조직체계는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경찰조직의 범위와 역할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현재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서, 파출소, 검문소 등 모든 경찰조직이 불심검문검색과 관련되어 있다.

경찰청은 불심검문검색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검문검색 업무 지침 개발, 전국 단위의 일제검문검색 계획수립과 지침 개발, 불심검문검색 조회 전산종합센터(입력, 관리, 처리 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의 전산종합센터는 모든 조회정보를 처리 하고 제공하는 불심검문검색의 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은 지역단위에서의 불심검문검색 전략 개발, 지역단위의 일제검문검색 계획수립 및 지침개발, 경찰청과 경찰서 및 파출소의 연계기능 등을 한다. 서울지방청의 경우에는 MDT시스템의 무선조회 의뢰를 직접 처리하여 검문검색 일선 현장에 직접 조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경찰서와 파출소는 불심검문검색의 최일선 조직으로 직접 불심검문검색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서의 외근경찰관들은 방법, 교통, 보안, 경비, 형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근경찰관

심검문검색을 말한다. 교통활동을 목적으로 한 불심검문검색은 고속도로 행사, 차량일제검문검색, 음주단속 등 교통단속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검문검색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비활동을 목적으로 한 불심검문검색은 경비 및 작전비상경계, 대간첩작전, 경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검문검색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방법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심검문검색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第 2 節 不審檢問檢索의 運營體系

1. 不審檢問檢索의 基本體系

불심검문검색의 주체, 대상 및 관련조직은 다음과 같다. 즉 경찰조직체계, 검문검색 경찰관, 조회체계, 검문검색 장비, 피검문자인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다.

(1) 경찰조직체계는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경찰조직의 범위와 역할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현재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서, 파출소, 걸문소 등 모든 경찰조직이 불심검문검색과 관련되어 있다.

경찰청은 불심검문검색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검문검색 업무 지침 개발, 전국 단위의 일제검문검색 계획수립과 지침 개발, 불심검문검색 조회 전산종합센터(입력, 관리, 처리 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의 전산종합센터는 모든 조회정보를 처리 하고 제공하는 불심검문검색의 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은 지역단위에서의 불심검문검색 전략 개발, 지역단위의 일제검문검색 계획수립 및 지침개발, 경찰청과 경찰서 및 파출소의 연계기능 등을 한다. 서울지방청의 경우에는 MDT시스템의 무선조회 의뢰를 직접 처리하여 검문검색 일선 현장에 직접 조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경찰서와 파출소는 불심검문검색의 최일선 조직으로 직접 불심검문검색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서의 외근경찰관들은 방법, 교통, 보안, 경비, 형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근경찰관

의 조회의뢰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일제검문검색 및 불심검문검색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한다.

파출소는 경찰활동의 최일선 거점조직으로 주로 방법 순찰활동의 일환으로 불심검문검색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파출소는 컴퓨터 단말기를 보유하고 외근파출소 경찰관들의 조회의뢰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파출소는 총 3,404개소로 경찰서당 평균 15개, 전체 경찰관의 약 44%인 4만여명(파출소당 평균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출장소, 경찰초소, 검문소도 파출소와 마찬가지로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2) 불심검문검색 경찰관은 평상시에는 주로 경찰서의 외근경찰관들(방법, 형사, 보안, 경비, 교통 등)과 파출소, 출장소, 검문소 등의 경찰관들이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경찰관들은 도보 혹은 차량을 이용하여 검문검색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불심검문검색 경찰관들은 피검문자인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불심검문검색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심검문검색 경찰관들의 근무행태, 자질, 교육훈련체계 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3) 조회체계는 조회정보체계, 조회절차, 조회장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불심검문검색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조회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4) 검문검색 장비는 검문검색체계의 각 구성요소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검문검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장비로는 예컨대 무전기, 통신체계,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 HDT, MDT, AVNI, 기타 각종 뉴미디어 등을 들 수 있다.

(5) 불심검문검색의 대상인 일반국민은 불심검문검색을 운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불심검문검색으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생활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되며, 불심검문검색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 徒步 不審檢問檢索 運營體系

도보 불심검문검색이란 검문검색 경찰관이 도보로 활동하면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이다. 도보 불심검문검색의 기본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피검문자를 선정하여 정지, 질문, 신원확인 등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 ② 휴대용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파출소나 경찰서에 피검문자에 대한 조회를 의뢰한다.
- ③ 파출소나 경찰서의 내근 근무자는 조회의뢰를 접수받아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를 활용하여 경찰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조회결과를 산출한다.
- ④ 파출소나 경찰서의 조회 담당자는 조회결과를 현장의 검문검색 경찰관에게 통보한다.
- ⑤ 현장의 검문검색 경찰관은 조회결과를 토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3. 車輛 不審檢問檢索 運營體系

가. 기본체계

차량 불심검문검색이란 두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찰관이 112 순찰차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도보 불심검문검색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심검문검색 대상을 사람이 아닌 차량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차적조회나 수배차량 조회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전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MDT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 송파경찰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12 순찰차량을 이용한 검문검색 방법은 기본적으로 도보 검문검색 방식과 유사하다. 검문검색 경찰관은 112 순찰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무전기를 사용하여 파출소나 경찰서에 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도보 검문검색 방식에 비하여 기동성과 광역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 순찰차 컴퓨터 단말기(Mobile Data Terminal ; M.D.T.) 의 불심 검문체계

(1) 기본체계

순찰차 컴퓨터 단말기시스템은 순찰차에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하고 무선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주민 및 차적조회를 실시하는 체계이다. 경찰청은 주파수 공용통신망(TRS 시스템)을 추진하면서 부수 시범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을 실시하였다. 서울지방청은 1995년 5월 1일에 송파경찰서의 순찰차 20대에 MDT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96년에는 서울지방청 7개 경찰서에 139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순찰차 컴퓨터 단말기 시스템은 112 순찰차량을 이동하면서 불심검문차량의 번호판의 차량번호를 MDT에 입력하여 현장에서 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차량조회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순찰차 컴퓨터 단말기 시스템에 의한 차량검문 검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MDT를 부착한 112 순찰차의 순찰 및 검문검색활동 중 검문검색을 실시할 차량을 선정하고 그 차량의 번호를 MDT에 입력하여 차적조회 및 수배차량조회를 실시한다.

② 현장의 MDT 순찰차량의 데이터가 입력되면 무선통신으로 서울경찰청 전산센터에 있는 메인컴퓨터에서 입력된 차량번호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로 현장의 순찰차 컴퓨터 단말기에 무선송신한다. 이 과정에서 대모산에 설치된 중계기가 현장의 순찰차량과 서울지방경찰청의 메인컴퓨터를 연결시켜 준다.

③ 현장의 경찰관은 조회정보를 토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MDT를 부착한 순찰차는 순찰활동을 하면서 직접 주민조회, 수배차량조회, 차적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지도와 사건위치 및 순찰차량 위치에 관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 이 차량에는 A.V.L. (Automatic Vehicle Location)이라고 하는 차량자동위치 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순찰차량위치 자동표시기능은 112 지령실의 대형 전자상황판에 순찰차량의 위치가 표시되고,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지휘, 통제가 가능하다.

(2) 운영평가

그동안 시범으로 실시되고 있는 MDT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MDT시스템은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다음 세가지 점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첫째는 조회처리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종래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파출소나 경찰서에 무전기로 조회를 의뢰함으로써 조회시간이 지체되었으나, 112 순찰차량에 조회 단말기인 MDT를 설치하여 직접 현장에서 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조회처리속도가 그만큼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지상태에서는 10초 정도 소요되며 이동시에는 30초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도, 차량번호에 대한 차적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교통 방해나 불편감 및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고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MDT 시스템을 실시하기 이전에 비하여 실시한 횟수, 범인검거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경찰서의 1년 동안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497,967건의 조회결과 381건의 검거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신속한 조회처리, 조회처리건수 증가와 아울러 피검문자가 모르게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 등의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표 1>

M. D. T 활용실적

기간 : 95년. 6월 - 96. 5월

과출소	계	검 거 / 건 수												비고
		6	7	8	9	10	11	12	1	2	3	4	5	
계	381	28	37	41	73	60	19	21	19	21	24	13	25	
	497967	33473	35589	34509	67758	66268	30899	43935	37472	36816	20253	46135	44860	
가락1	7				4	2							1	
	15915	658	801	1202	2958	2361	1028	909	1153	1812	597	1175	1261	
가농	17	1	1		6		1		1		2	2	3	
	18908	1017	1988	1584	2760	2853	803	800	2012	807	1308	1636	1340	
승과1	6			1			2	3						
	33925	2092	1240	3399	4798	4489	3119	3578	4120	1389	1060	2756	1885	
승과2	7		1		3	3								
	21630	1372	955	1518	2812	2586	1381	2407	1560	1879	797	2417	1945	
석촌	8			1	3		1				2		1	
	21111	1492	758	1041	2185	1735	1200	2986	3154	2819	668	1257	1816	
삼전	5		1	1		1	1		1					
	14477	831	986	1156	1820	2071	1251	727	889	1012	568	1662	1504	
삼실	23			2	6	5	1	4	1	1	1	1	1	
	25982	1395	1523	1561	2111	3787	1649	3969	2326	2581	809	2532	1739	
삼실1	27		4	5	6	3	1	1			2		3	
	25807	1471	1512	1483	3188	3359	1043	1678	3371	2151	991	2223	3337	
삼실2	32	7	2	3	3	4	1		3	2			7	
	28699	2462	2596	1601	3984	5222	2178	1540	321	2134	703	2541	2417	
삼실3	19	1	1	1	3	4	3	1	3	1			1	
	23708	1449	1318	1260	3543	3541	1376	1988	1540	2215	543	2369	2566	
삼실5	34	2	1	2	13	5	2		1	3	1	3	1	
	43403	2676	1476	2728	8754	6308	2680	4000	3361	4011	1192	2550	3667	
삼실6	20				6	5		1	1	2	2	2	1	
	16160	787	686	908	2310	3009	1157	2100	509	677	876	1586	1555	
풍납1	76	7	16	14	7	12		5	4	3	2	3	3	
	72012	5867	8558	5938	8571	7801	3847	5605	3191	5938	4089	7351	5256	
풍납2	31	2	3	3	5	8	2	1		3	2	2		
	21064	926	2481	1599	2552	3129	1906	2351	1987	838	792	1198	1305	
오륜	12	1	2		1	1							1	
	18503	1425	1174	2126	3034	1370	1180	1134	1139	908	1003	2301	1709	
방이	10	2		2	2	1	1	1				1		
	23933	1553	2604	1743	2312	3050	1677	2175	1719	823	631	2464	3182	
오금	6	1	2					1				2		
	20713	2021	2032	820	1100	3640	780	1931	738	760	1234	2799	2858	
마천2														
	19272	1589	1198	716	2618	2087	1235	1242	1545	2131	912	1746	2253	
서여	5	1		1	1	1							1	
	17135	781	883	1322	4336	2336	612	1711	876	605	871	1636	1166	
분경	36	3	3	5	4	5	3	3	4	2	3		1	
	15610	1609	820	804	2014	1534	797	1104	961	1326	609	1933	2099	

4. 檢問所의 不審檢問檢索 運營體系

가. 일반절차

현재 파출소는 특정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인원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문소의 불심검문은 ① 검문소 바리케이드 설치 → ② 차량정지 및 질문 → ③ 파출소에 무전기를 사용하여 차량조회, 운전면허조회, 주민조회 등 의뢰 → ④ 파출소의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 조회 실시 및 결과통보 → ⑤ 조회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검문소에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출소에 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 절차가 생략되므로 그만큼 조회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나 실제로 임시검문소에는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검문소의 불심검문체계에서는 실제로 조회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교통정체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범인차량이 불심검문 실시 상황을 인지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

나. 차량번호 자동판독(AVNI) 시스템

차량번호 자동판독시스템(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은 통행하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도난차량 혹은 수배차량이 포착되면 검문소 등에 연락하여 즉시 검거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차량감지기, 그속카메라, 번호인식장치, 주전산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스템은 ① 카메라 감지기 감지 → ② 경찰청 주전산기 → ③ 검문소 모니터에 조회정보 제공 → ④ 차량정지 검문여부결정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반 검문소의 불심검문과는 달리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도 조회를 실시할 수 있고 불심검문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 검문검색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第 3 節 不審檢問檢索의 照會體系

1. 照會體系

불심검문검색에서 조회체계는 피검문자 및 피검문차량이 범인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검문검색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회체계는 불심검문검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회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정확성이다. 조회결과에 따른 조회내용이 정확하고 조회목적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는 조회정보 분류와 입력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조회장비가 정밀해야 한다.

둘째는 신속성이다. 검문검색제도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한 짧아야 한다. 현재 불심검문검색 제도에 대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피검문자를 정지시키고 조회를 의뢰하여 조회결과를 통보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조회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회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조회인원을 적정 배치해야 하며, 조회장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네트워크체계다. 조회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즉 현장 검문검색경찰관, 파출소 및 경찰서의 조회 담당부서, 경찰청 전산온라인시스템, 조회정보입력부서 등 관련 구성요소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주민조회, 수배조회, 차적조회 등 조회정보간의 연계체계를 갖추으로써 주민조회를 하는 경우에도 수배 및 차적조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반복조회에 따른 불편함을 해결하고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第 3 節 不審檢問檢索의 照會體系

1. 照會體系

불심검문검색에서 조회체계는 피검문자 및 피검문차량이 범인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검문검색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회체계는 불심검문검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회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정확성이다. 조회결과에 따른 조회내용이 정확하고 조회목적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는 조회정보 분류와 입력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조회장비가 정밀해야 한다.

둘째는 신속성이다. 검문검색제도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한 짧아야 한다. 현재 불심검문검색 제도에 대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피검문자를 정지시키고 조회를 의뢰하여 조회결과를 통보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조회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회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조회인원을 적정 배치해야 하며, 조회장비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네트워크체계다. 조회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즉 현장 검문검색경찰관, 파출소 및 경찰서의 조회 담당부서, 경찰청 전산온라인시스템, 조회정보입력부서 등 관련 구성요소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주민조회, 수배조회, 차적조회 등 조회정보간의 연계체계를 갖추으로써 주민조회를 하는 경우에도 수배 및 차적조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반복조회에 따른 불편함을 해결하고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照會類型과 實施 件數

현재 경찰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처리되는 조회정보는 주민, 전과, 수배, 연고지수배, 수법, 피해통보, 공안, 보안, 행정제재, 안보색인, 외사보안, 인터폴, 182, 도난차량, 운전면허, 차적, 인사, 장비, 우범자, 민유총기, 수렵총기, 도난총기, 정보소표, 범죄통계, 신원조사, 해경유류, 보고통제, 형사 및 행정, 부정계좌, S.C업무, 가동경력, 온라인통신, 조직폭력배, 중요사건, 공안고유, 중기차량, 미조회관서, 정기간행물, 월간통계, 일일통계 등이다.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할 때 주로 조회하는 정보로는 주민조회, 수배조회, 도난차량조회, 차적 조회 등이다. 그러나 파출소의 조회용컴퓨터로는 일상적인 조회정보중에서 오토바이 조회나 지문조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문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일 피검문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알고 검문검색경찰관의 질문과 조회에 응하는 경우에는 신분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은 사전에 지문을 전산입력하여 이를 추후 검색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해 내는 시스템으로 경찰청 형사국 감식과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일년동안 경찰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처리된 총 조회건수는 123,693,363건이며 이중 주민, 수배, 도난차량, 차적 조회건수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96,635,813건으로 78.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한 해 동안 주민조회건수는 39,495,563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배조회는 23,277,605건으로 18.3%, 도난차량은 7,794,385건으로 6.3%, 차적조회는 26,068,260건으로 21.1%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서의 온라인 조회통계를 월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6년 2월의 경우 총 조회건수는 7,226,73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주민조회건수는 2,513,990건으로 34.8%를 차지하고 있다. 수배조회는 8.4%, 도난차량조회는 11.2%, 차적조회는 30.1%로 나타났으며, 1996년 5월의 경우, 총 조회건수 15,732,659중에서 주민조회 44.4%, 수배조회 16.5%, 도난차량 4.1%, 차적조회 26.9%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1996년 3월 한달 동안 경찰서의

조회건수 10,094,702건을 1시간당 조회건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간당 120건 이상을 조회한 경찰서는 51개 관서로 나타났으며, 1시간당 조회건수가 20건미만인 경찰서는 13개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회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파출소의 경우에는 <표 4>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파출소에 따라서 조회건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6년 2월과 5월의 컴퓨터 단말기 조회건수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권의 파출소가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회유형별로는 경찰서 조회유형과 마찬가지로 주민조회와 차적조회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2> 1995년도 경찰컴퓨터 단말기 처리실적
1995. 1. 1.~1995. 12. 31 단위 : 건

구 분	계	주 민	수 배	도난차량	차 적	
총 계	96,635,813	39,495,563	23,277,605	7,794,385	26,068,260	
경찰청	984,356	944,206	32,871	356	6,923	
시 도 계	계	93,393,512	37,288,331	22,326,155	7,793,666	25,985,360
	서울	20,536,554	9,640,918	5,170,375	720,430	5,004,831
	부산	7,628,746	3,865,357	1,986,905	262,345	1,514,139
	대구	6,138,305	1,741,098	854,900	165,028	781,281
	인천	9,023,522	1,722,107	928,772	4,961,880	1,410,763
	경기	11,306,977	4,760,353	4,088,875	232,933	2,224,816
	강원	6,632,673	1,644,280	1,564,913	495,258	2,928,222
	충북	2,609,978	755,718	756,796	72,270	1,025,194
	충남	6,166,229	2,316,102	1,319,208	199,466	2,331,453
	전북	4,274,025	1,681,871	708,404	178,961	1,704,789
	전남	6,446,779	2,561,646	1,518,714	142,937	2,223,482
	경북	7,835,708	3,161,954	2,170,295	173,735	2,329,724
	경남	6,434,401	2,930,010	981,452	90,665	2,432,274
	제주	944,613	486,917	285,546	97,758	74,392
기 타	2,257,945	1,263,026	918,579	363	75,977	

주) 총 처리건수는 123,693,363건이며 이중 주민, 수배, 도난차량, 차적조회건수는 96,635,813건이다.

〈표 3〉 경찰서의 월별 온라인 조회 통계 단위: 건

조회기간 업무구분	1996년 2월		1996년 5월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합 계	7,226,739	100.0	15,732,659	100.0
주 민	2,513,990	34.8	6,990,135	44.4
수 배	606,950	8.4	2,593,019	16.5
도난차량	808,836	11.2	644,936	4.1
차 적	2,172,064	30.1	4,233,663	26.9
기 타	1,575,823	21.8	1,270,906	8.1

〈표 4〉 1996년 2월 파출소별 컴퓨터 단말기 처리실적 단위: 건

파출소명 업무명	계	주 민	수 배	도난차량	차 적	기 타
서울 강서 개화	948	473	165	46	215	49
서울 송파 장지(검)	4,150	1,131	1,325	14	1,562	118
부산 금정 팔송	1,610	856	48	81	568	57
부산 해운대 송정	476	300	35	17	106	18
대구 달서 송현1	1,225	741	46	66	338	34
경기 과천 운곡	737	341	116	28	229	23
강원 감척 원덕	1,473	527	26	12	862	46
충북 청주 동북 문의	250	164	7	.	68	11
전북 군산 대야	368	239	27	.	60	42
경북 포항북부 송라	1,160	261	54	4	800	41
경남 밀양 산외	266	139	9	.	113	5
전남 화순 이서	189	37	4	.	110	38
충북 옥천 청성	361	49	20	.	278	14
경기 양평 용문	518	359	33	.	118	8
강원 평창 용평	3,204	318	56	2,429	375	26

〈표 5〉 1996년 5월 파출소별 컴퓨터 단말기 처리실적 단위: 건

과출소명 \ 업무명	계	주 민	수 배	도난차량	차 적	기 타
서울 강서 개화	2,816	1,440	873	26	393	84
서울 송파 장지(검)	4,618	860	2,218	11	1,340	189
부산 급정 팔송	7,174	3,346	1,443	62	2,121	202
부산 해운대 송정	3,201	1,377	388	20	1,403	13
대구 달서 송현1	2,642	1,586	266	104	642	44
경기 과천 운곡	5,419	3,280	793	24	1,282	40
강원 감척 원덕	1,433	343	31	14	1,016	29
충북 청주 동북문의	504	301	10	3	165	25
전북 군산 대야	805	313	110	7	345	30
경북 포항북부 송라	2,221	549	149	17	1,368	138
경남 밀양 산외	526	260	50	3	186	27
전남 화순 이서	635	286	102	4	231	12
충북 옥천 청성	600	113	104	.	347	36
경기 양평 용문	5,495	1,974	529	170	2,773	49
강원 평창 용평	1,926	324	378	288	921	15

3. 照會 所要時間

일반적으로 조회 소요시간이란 현장에서 경찰관이 피검분자에 대해 불심검문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피검분자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다시 통보받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현행 불심검문검색제도의 가장 큰 과제로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문제를 들었다. 불심검문검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회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무전기 통신,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 조회, 조회경찰관, 조회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표 6> <표 7>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빠른 경우에는 대략 10초에서 100초 정도이며, 평상시 보통의 경우에는 1분에서 2분 정도, 느린 경우에는 3분에서 4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경찰관중에서 느린 경우에 200초(3분 20초)를 넘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8.5%나 차지하고 있었다. 조회용 단말기에서 직접 조회를 할 경우 응답시간은 일반적으로 조회를 실시한 시간과 조회종류(예컨대 인적조회, 차적조회, 면허조회 등)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면허조회를 제외하고는 8초 이내다.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불심검문검색 체계에서 조회시간이 지체되는 요인으로는 다음 몇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 조회절차가 다단계로 복잡할수록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현행 조회체계는 일반적으로 ① 현장 검문검색 경찰관의 무전기를 이용한 조회의뢰 → ② 파출소 및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 조회접수 → ③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를 활용한 조회 → ④ 조회 처리결과를 현장 검문검색 경찰관에게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것은 현장 즉응적인 조회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M.D.T 시스템과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시스템은 현장 즉응적인 조회체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무전기를 이용한 통신체계와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가 장애를 일으켜 조회 소요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전기 자체의 결함과 V H F 주파수 문제,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의 시스템 다운과 조회 처리속도 용량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현재 파출소에서 조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은 소내 및 대기근무자인데 소내 및 대기근무 업무가 많을수록 조회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 소내 및 대기근무란 파출소 내에서의 문서수발 및 부책정리, 전화취급 또는 속보, 즉보 및 수배사항의 보고, 파출소내에서 사건취급 및 처리, 파출소내의 청소정돈 및 자체경비, 민원 및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지리교시, 기타 제 안내, 조회, 교양, 지시, 기타 소내에서 행하는 제근무를 말한다.

넷째는 일제 검문검색기간이나 조회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무전기와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가 계속 통화중으로 조회연결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섯째 현재 무전기는 검문검색 경찰관 1인 1대씩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문검색중 무전기가 없어 피검문자를 기다리게 하거나 주민등록증만 제시받아 확인 후 통과시키거나 인근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조회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표 6〉 불심검문 조회 소요시간 (빠른 경우) 단위 : 초,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0-10	71	12.2
11-20	95	16.4
21-30	110	18.9
31-40	41	7.1
41-50	17	2.9
51-100	144	24.8
101-200	83	14.3
201이상	20	3.4
missing	44	
계	625	100.0

〈표 7〉 불심검문 조회 소요시간 (평상시 보통) 단위 : 초,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0-10	17	3.0
11-20	52	9.2
21-30	69	12.2
31-40	42	7.4
41-50	32	5.7
51-100	139	24.6
101-200	133	23.5
201 이상	81	14.3
missing	60	
계	625	100.0

〈표 8〉 불심검문 조회 소요시간 (느린 경우) 단위 : 초,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0-10	6	1.1
11-20	16	3.0
21-30	23	4.3
31-40	10	1.9
41-50	15	2.8
51-100	95	17.7
101-200	166	30.9
201이상	207	38.5
missing	87	
계	625	100.0

第 4 節 不審檢問檢索 裝備實態

1. 不審檢問檢索 裝備의 重要性

불심검문검색 장비는 불심검문검색 과정에 사용되는 무전기, 컴퓨터단말기, 112 순찰차, HDT, MDT, 차량번호자동판독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비는 다음 두가지 점에서 불심검문검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첫째, 검문검색장비는 검문검색과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검문검색장비가 잘 갖추어지면 조회시간이 단축되고, 조회내용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둘째, 검문검색장비는 검문검색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검문검색 장비를 첨단화함으로써 검문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피검문자인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으며,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도 차량조회를 할 수 있게 되면 검문검색을 받고 있다는데서 오는 불쾌감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표 8〉 불심검문 조회 소요시간 (느린 경우) 단위 : 초,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0-10	6	1.1
11-20	16	3.0
21-30	23	4.3
31-40	10	1.9
41-50	15	2.8
51-100	95	17.7
101-200	166	30.9
201이상	207	38.5
missing	87	
계	625	100.0

第 4 節 不審檢問檢索 裝備實態

1. 不審檢問檢索 裝備의 重要性

불심검문검색 장비는 불심검문검색 과정에 사용되는 무전기, 컴퓨터단말기, 112 순찰차, HDT, MDT, 차량번호자동판독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비는 다음 두가지 점에서 불심검문검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첫째, 검문검색장비는 검문검색과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검문검색장비가 잘 갖추어지면 조회시간이 단축되고, 조회내용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둘째, 검문검색장비는 검문검색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검문검색 장비를 첨단화함으로써 검문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피검문자인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으며,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도 차량조회를 할 수 있게 되면 검문검색을 받고 있다는데서 오는 불쾌감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불심검문검색 체계에서 검문검색 장비를 고도화하게 되면 불심검문검색의 많은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불심검문검색 장비는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와 부전기 등 통신장비, MDT, 차량번호자동판독기 등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2. 照會用 컴퓨터 단말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검문검색 경찰관은 피검문자를 대상으로 부전기를 사용하여 주민조회, 수배조회, 차적조회 등을 파출소나 경찰서에 의뢰하게 된다. 의뢰를 접수한 파출소나 경찰서의 관련직원은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경찰청의 온라인네트워크를 통해 조회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의뢰한 검문검색 경찰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따라서 검문검색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1995년 현재 경찰청 전자계산소 시스템의 현지 단말기는 4,799대 정도이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에 대하여 주로 다음 두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일제 검문검색 등 피크타임시 응답속도가 느려서 현장에서의 조회의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재 모델 처리속도는 2,400 bps로 15초-20초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그동안 모델 처리속도를 4,800 bps 혹은 9600 bps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둘째로 현재 파출소에 있는 조회용컴퓨터는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고장장애는 조회시간을 더 연장시킴으로써 피검문자인 시민들에 불편함과 불쾌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범인검거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검문검색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1달동안 평균 4.3회 정도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한 번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11.3%에 불과하였다(표 9). 그리고 조회용단말기 고장장

에 건수가 1회에서 5회사이인 경우는 전체의 59.8%, 6회에서 10회사이인 경우는 전체의 16.5%, 11회 이상은 12.2%로 나타났다.

〈표 9〉 최근 1달동안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 고장 장애 건수

구 분	빈 도	비 율
0	61	11.3
1	82	15.2
2	95	17.6
3	69	12.8
4	32	5.9
5	45	8.3
6	9	1.7
7	19	3.5
8	11	2.0
9	3	0.6
10	47	8.7
11 이상	66	12.2
missing	86	
계	625	100.0

3. 無電機 등 通信裝備

무전기는 불심검문검색 경찰관이 파출소나 경찰서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에 피검문자에 대한 조회를 의뢰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서 개인 휴대용무전기와 112 순찰차량 부착 무전기 등이 있다. 현재 무전기는 부족하여 개인별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장 검문검색경찰관들은 무전기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무전기가 구형이며 고장이 많고,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장수리절차도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불심검문검색 경찰관을 대상으로 최근 1달 동안 무전기의 고장 장애 건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1%만 한 번도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회 고장 건수는 21.5%, 2회는 17.6%, 3회는 11.8%로 나타났으며 7회 이상인 경우도 4.3%나 되었다(표 10).

〈표 10〉 최근 1달동안 무전기 고장 장애 건수

구 분	비 율	빈 도
0	140	27.1
1	111	21.5
2	91	17.6
3	61	11.8
4	24	4.6
5	28	5.4
6	40	7.7
7건 이상	22	4.3
missing	108	0
계	625	100.0

둘째는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할 경우와 같이 통신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통신 혼선 및 통신불능상태가 많이 발생하여 조화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현행 무선통신 주파수체계가 대부분 초단파(VHF)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주파수를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주파수 방식을 TRS(주파수 공용무선망)을 바꾸거나 휴대용무선전화기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경찰에서도 800 MHz대역의 주파수 공용무선망(TRS)을 서울 지역에 설치 1994년 6월부터 정상 운용하고 있고 인천 지역에서도 '97년 하반기부터 추가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다. 또한 향후 대도시권과 기타 지역망을 현

초단파(VHF)방식 통신망 대신 극 초단파 주파수공용무선망(UHF TRS)으로 대체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을 제외한 타 시도 지방경찰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VHF 무선 통신망은 채널 전용방식으로 지휘, 교통, 방범, 경호, 경비 등 광역망과 각 경찰서별로 관할 지역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자서망으로 대별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채널 전용방식은 사용빈도가 많은 지휘, 교통망 등은 1개의 채널로 동일망에 가입된 다수자가 사용하므로 통화폭주현상이 발생하고 사용빈도가 적은 경호망은 휴지시간이 많아 주파수 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경제성이 따른다. 이 초단파 무선망은 주파수 부족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동일하게 운용되기 때문에 상호 간섭에 의한 혼신 및 잡음이 생겨 치안업무에 장애를 주고 있으며 주파수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획득하기가 어려워므로 신설 경찰관서에 주파수를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방식은 또한 주파수 대역이 139-150 MHz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고압전력선, 고주파 기기에서 방사되는 전파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음뿐더러 밀집된 일반인들의 주파수 대역 사용으로 상호 간섭에 의한 혼신과 잡음이 유기되어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반면에 주파수공용무선망(TRS)은 지휘, 교통, 방범, 자서망 등 여러 개의 주파수를 망별로 고정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 전체를 주로 고지대에 설치된 통신 중계기에 공동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무전기 사용자가 여러개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채널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체계이며, 시스템관리 컴퓨터와 중계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특수 기능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주파수 공용방식은 또한 다수 채널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집속이 용이하고 주파수 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무전기 사용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 통화내용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인간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무선망을 관리제어하는 컴퓨터에 의해 분실 무전기에 대한 사용거부 조치로 도청 및 통신방해를 차단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파수가 망별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선망을 관리하는 제어 컴퓨터가 자동으로 채널을

전환시키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불법 무선기로 주파수를 조정할 경우 순간적인 도청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도청은 방지할 수 있는 사용상의 장점이 있다. 데이터 통신도 가능하여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중계기를 항시 거쳐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 건물에서 소통이 VHF 보다 용이하지 않고 단순 무선 통화를 위한 부전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특수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을 무선기 내에 장착하였기 때문에 기존 주파수 전용방식의 무선기보다 다소 크고 무거운 단점이 있다(표 11).

서울경찰청이 1994년 6월부터 TRS를 채택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다.

(1) 제한된 소수 주파수를 보다 많은 경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2) 이동하면서 직접 주변 및 차적조회 등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3) 경찰 무선통신 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도청을 방지하고 통신 방해요소를 차단하여 깨끗한 통화음질을 확보한다.

〈표 11〉 기존 통신방식과 주파수 공용통신 방식 비교

항 목	주파수 전용방식(기존)	주파수 공용방식(신규)
주파수 대역	139MHz - 150MHz	800MHz
전파 파장	약 200m	약 37cm
혼신, 잡음	많음	미세
채널운용	1개 채널 1개망 운용	다 채널 다수망 공동운용
불법무선기 도청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무선기, 분실에 따른 보안성	취약	강함
통화내용 비밀성	통화내용 공개	통화내용 공개 및 비공개 선택 사용가능
통화접속율	통화상태가 많아 접속율이 낮음	주파수를 공용하므로 통화 접속율이 높음
주파수활용도(효율)	낮음	높음
지하실 소통율	보통	낮음

자료 : 정경모, "경찰 무선통신망 구축 방안에 관한 고찰 - 주파수공용시 스템(TRS)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제5호, 1996.9. 4.

4. 巡察車 컴퓨터 단말기(M.D.T)

순찰차 컴퓨터 단말기란 112 순찰차에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하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주민 및 차적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이다. 순찰차 컴퓨터 단말기는 주파수 무선통신망을 TRS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95년 5월 1일 서울지방청 송파서의 순찰차 20대에 설치되어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1996년에는 서울지방청 7개 경찰서에 11억 2천 5백만원을 들여 139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와 기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찰차 컴퓨터 단말기는 직접 현장에서 조회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회처리속도가 향상되고, 불심검문검색의 기동성을 높여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MDT장비는 다음 몇가지 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

첫째, MDT 장비는 고장이 잦으며, 차량이 이동중이거나 도로가 평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회속도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112 순찰차량에 MDT 장비를 설치함에 따라 접속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차적조회를 통하여 특정차량을 검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간지연에 따라 특정 차량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1994년 5월 1일 - 94년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18개 차량의 경우 총 고장횟수는 64건으로 일일 2.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잦은 고장발생건수는 8회였으며, 가장 적은 고장발생건수는 1회였다.

둘째, 기존의 112 순찰차에 MDT 장비를 설치함에 따라 순찰차 내부공간이 좁아졌으며, 순찰차량내에서 근무시 불편함이 수반되고 있다. MDT장비는 크기가 크고 중량이 무겁다. 특히 승·하차시 무릎이 부딪쳐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차량접촉사고 등 경미한 차량사고에도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차량 및 트렁크에 M.D.T 공급용 배터리를 추가하여 장착함으로써 과중 적재도어 및 선부분이 노면에 부딪치는 사례가 있다.

셋째, 각종 조회시 수신대기 및 센터로부터 중지 등 사유로 인하여 조회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조회시 차적조회 및 주민조회를 한 다음에 다시 수배조회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연된다.

다섯째, 차량운행 중 키보드 조작시 차량유동으로 키판을 건들일 경우 다시 조회하는 등 오조작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여섯째, M.D.T. 고장이 잦고 고장시 외국기술진이 수리하기 때문에 수리 및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곱째, M.D.T가 장착된 112 순찰차량은 민간 차량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하여 고장이 잦기 때문에 불심검문검색시 현장 즉응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불심검문검색으로 차적을 조회하여 불심점이 발견될 경우 대상 차량보다 성능이 떨어져 신속하게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1994년 말 현재 전국 10개 지방청 및 모든 경찰서에 112 지령실을 두고 있으며, 그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112순찰차는 총 2,283대로 전체 파출소의 60%인 2,033 개소에 배치 운용하고 있다.

5. 車輛番號 自動判讀器(AVNI)

가. 개념과 기능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란 통행하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도난차량 혹은 범법차량이 포착되면 검문소에 연락하여 즉시 검거하게 하는 첨단장치이다. 이 장치는 도로에 차량번호감지용 카메라와 온라인 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카메라가 검문소 앞에서 차량번호를 감지하여 자동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이 장치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팀과 국내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차량이 지나갈 때 도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함과 동시에 고속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장치는 범죄의 기동화와 광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차량번호자동판독장치는 다음 몇가지 점에서 불심검문검색 장비로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검문검색을 위하여 차량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문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체계보다 단축할 수 있으며,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검문검색시 피검문자가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으며, 피검문자는 자신이 검문검색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검문자는 불심검문검색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긴장과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검문검색 경찰관은 불심점을 발견할 경우에 수배자인 피검문자가 검문검색으로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구성체계

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은 차량감지기, 고속카메라, 번호인식장치, 주전산기 등 4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검문소로부터 200-500m 전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차량번호를 촬영한 후 1-3초 이내에 범법차량 혹은 도난차량 여부를 판별하여 검문소 모니터에 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절차는 ① 카메라 감지기 감지→ ② 경찰청 주전산기→ ③ 검문소 모니터에 조회 정보 제공→ ④ 차량정지 검문 여부 결정 등이다. 주요 장비는 감지장치, 촬영장치, 조명장치, 영상인식장치, 검색장치, 컴퓨터, 수배차량 표시기, 모니터 등이 있다.

- 감지장치 ; 카메라 전방 20미터 노면에 루프코일로 매설되어 차량이 통과하면 촬영장치로 신호를 보내어 카메라와 조명장치가 동작하도록 하는 장치
- 촬영장치 ; 지상 6미터에 설치된 고화질, 고속카메라로 주행중인 차량번호판을 촬영
- 조명장치 ; 야간에 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적외선 조명을 사용하며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음
- 영상인식장치 ; 카메라가 촬영한 번호판을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이용 차량번호를 추출하는 장치
- 검색장치 ; 인식장치로부터 받은 차량번호를 자체 저장하고 있는 수배 차량

목록과 비교하여 수배여부를 검색

- 컴퓨터 ; 경찰청 주 컴퓨터에서 수배차량 목록을 전송받아 저장, 검색된 수배차량 번호를 검문소에 전송 및 각종 장치의 작동상태를 조정 통제함
- 수배차량 표시기 ; 수배차량 번호를 검문소 요원이 검문소밖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경광등과 함께 설치되어 있음
- 모니터 ; 검문소안에 설치되어 차량형태와 번호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다. 적용 및 문제점

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은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4개소가 설치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설치비용은 대략 차선당 1억6천만원 정도이다.

이 시스템은 앞으로 검문검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능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는 카메라 센서가 차량번호를 감지하여 판독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차량을 분실신고 후 다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실신고를 철회하지 않아 본인이 도난차량 범인으로 감지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第 5 節 一濟檢問檢索制度의 運營實態

1. 一濟檢問檢索의 基本體系

일제검문검색제도는 평상시의 검문검색과는 다음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일제 검문검색제도는 특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평상시 순찰방법활동이나 외근경찰 활동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둘째는 일정한 기간에 경찰력을 집중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특정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는 평상시의 검문검색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평상시의 검문검색이 파출소나 경찰서를 중심으로

목록과 비교하여 수배여부를 검색

- 컴퓨터 ; 경찰청 주 컴퓨터에서 수배차량 목록을 전송받아 저장, 검색된 수배차량 번호를 검문소에 전송 및 각종 장치의 작동상태를 조정 통제함
- 수배차량 표시기 ; 수배차량 번호를 검문소 요원이 검문소밖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경광등과 함께 설치되어 있음
- 모니터 ; 검문소안에 설치되어 차량형태와 번호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다. 적용 및 문제점

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은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4개소가 설치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설치비용은 대략 차선당 1억6천만원 정도이다.

이 시스템은 앞으로 검문검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능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는 카메라 센서가 차량번호를 감지하여 판독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차량을 분실신고 후 다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실신고를 철회하지 않아 본인이 도난차량 범인으로 감지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第 5 節 一濟檢問檢索制度의 運營實態

1. 一濟檢問檢索의 基本體系

일제검문검색제도는 평상시의 검문검색과는 다음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일제 검문검색제도는 특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평상시 순찰방법활동이나 외근경찰 활동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둘째는 일정한 기간에 경찰력을 집중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특정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는 평상시의 검문검색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평상시의 검문검색이 파출소나 경찰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제검문검색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등 광역단위에서 실시된다(표 12).

따라서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정목적, 실시기간, 지역적 실시범위, 경찰조직들 간의 협력 및 조정 등을 고려하여 전략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현행 검문검색 업무지침에는 경찰청의 일제검문검색을 크게 형사, 방법, 교통, 경비, 보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하는 상황으로는 크게 다섯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형사분야로 중요범인 검거, 기소중지자 검거, 선거사범 단속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검문검색이다. 둘째는 방법분야로 연말연시, 설날, 추석전후의 방법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검문검색이다. 셋째는 교통분야로 고속도로 행사, 차량일제검문검색, 음주단속 등 교통단속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검문검색이다. 넷째는 경비분야로 경비-작전비상경계, 대간첩작전, 경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검문검색이다. 다섯째는 보안분야로 보안사범 단속, 불순분자단속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검문검색이다.

〈표 12〉 지방경찰청 일제검문검색 운영실태 기간: '95.1.1.-10.25

구 분 지방청별	근무시간	근무방법	횟 수	공통사항
서울지방청	20:00~23:00	릴레이식순환근무 고정 및 유동근무 병행	주1회(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지방청 일제 지시에 의한 동시근무(형사, 방법 주관) · 전가용경력동원 배치 · 2-4명 1개로, 정사복 혼성배치
인천지방청	20:00~01:00	고정 및 유동 근무	월2 ~ 4 회	
부산지방청	20:00~01:00	"	(")	
경기지방청	20:30~24:30	" (필요시 완전고정)	월1회(") 월2회(")	

지방경찰청, 해안경찰청 및 경찰서는 경찰청에 준하여 일제검문검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제검문검색제도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실시할 경우, 평상시의 순찰활동이나 검문검색보다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일제검문검색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서, 파출소 등 일제검문검색에 참여하는 경찰 조직들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 및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광역성과 지역성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

2. 一濟檢問檢索의 運營實態

현장에서 검문검색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심검문검색제도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일제검문검색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검문검색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7%는 “약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5.8%는 “효과가 없는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20.4%는 중간정도라고 응답하였다(표 13). 이것은 평상시 검문검색제도의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제검문검색제도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에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표 13〉 일제검문검색의 효과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효과가 크다	69	11.1
약간 효과가 있다	231	37.0
중간이다	127	20.4
효과가 없는 편이다	161	25.8
전혀 효과가 없다	36	5.8
missing	1	
계	625	100.0

첫째, 일제검문검색의 횟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지방청의 경우에는 주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찰서의 일제검문검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한 경찰서의 경우, 1995년 일년 동안 총 48회의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경찰서의 경우 월 4회, 주 1회로 일제검문검색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잦은 일제검문검색은 경찰자원의 집중동원에 따른 비용을 크게하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불심검문으로 호를 여지가 많다.

둘째, 검문검색 경찰관들은 일제검문검색 기간동안에 잦은 동원근무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문검색 경찰관들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검문검색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파출소 및 경찰서의 외근경찰관들은 비번인 경우에도 일제검문검색 기간 동안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일제검문검색 기간중에 비번인 경우에도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14), 응답 경찰관의 39.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20.7%는 “약간 그렇다”, 13.4%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34.1% 정도가 비번인 경우에도 일제검문검색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비번인 경우 일제검문검색 참여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다	81	13.4
약간그렇다	125	20.7
중간이다	66	10.9
그렇지 않다	237	39.2
전혀 그렇지 않다	96	15.9
missing	20	
계	625	100.0

평균; 3.235

셋째, 주로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함에 따라

경찰서와 파출소의 자율적인 검문검색 활동이 위축되기 쉬우며 지역의 치안여건과 방법수요에 적합한 검문검색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역의 경찰서 한곳을 조사한 결과, 1995년 일년동안 총 48회의 일제검문검색은 전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일제검문검색 실시에 따른 것으로 지방경찰서가 자체 기획한 일제검문검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일제검문검색제도는 평상시의 검문검색제도와는 달리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문검색 실시 범위가 광역이라고 하여 상위 경찰조직이 획일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선 검문검색 실시 기관의 자율성과 상위 경찰조직의 조정 및 상호연계기능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일제검문검색제도는 파출소나 경찰서의 자율성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일제검문검색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검문행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것은 검문검색 지침에 의거하여 실효성있게 검문검색 대상자를 선정하기 보다는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는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식적 검문검색 행태는 잦은 검문검색 실시, 검문검색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획일적인 검문검색우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일제검문시 조회량이 급증함에 따라 현 초단파 (V H F)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 장애가 자주 발생하며, 조회용 컴퓨터 터미널의 조회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第 6 節 不審檢問 警察官의 勤務行態

1. 警察官의 檢問檢索 資質과 實施指針

일반적으로 불심검문제도의 분세점의 하나로 근무경찰관의 검문검색에 대한 자질 및 인식수준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불심검문은 경찰과 일반시민의 접촉

경찰서와 파출소의 자율적인 검문검색 활동이 위축되기 쉬우며 지역의 치안여건과 방법수요에 적합한 검문검색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역의 경찰서 한곳을 조사한 결과, 1995년 일년동안 총 48회의 일제검문검색은 전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일제검문검색 실시에 따른 것으로 지방경찰서가 자체 기획한 일제검문검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일제검문검색제도는 평상시의 검문검색제도와는 달리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문검색 실시 범위가 광역이라고 하여 상위 경찰조직이 획일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선 검문검색 실시 기관의 자율성과 상위 경찰조직의 조정 및 상호연계기능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일제검문검색제도는 파출소나 경찰서의 자율성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일제검문검색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검문행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것은 검문검색 지침에 의거하여 실효성있게 검문검색 대상자를 선정하기 보다는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는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식적 검문검색 행태는 잦은 검문검색 실시, 검문검색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획일적인 검문검색우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일제검문시 조회량이 급증함에 따라 현 초단파(VHF)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 장애가 자주 발생하며, 조회용 컴퓨터 터미널의 조회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第 6 節 不審檢問 警察官의 勤務行態

1. 警察官의 檢問檢索 資質과 實施指針

일반적으로 불심검문제도의 분세점의 하나로 근무경찰관의 검문검색에 대한 자질 및 인식수준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불심검문은 경찰과 일반시민의 접촉

현장으로 경찰관들의 불심검문행태는 경찰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경찰관의 불심검문행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경찰관들이 불심검문에 관한 법규와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2) 경찰관들의 불심검문행태가 피동적이고 형식적이며 검문검색 실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경찰관들의 인권의식수준이 아직도 낮으며,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도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차량검문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검문시간 지체에 따른 불편을 들 수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검문검색 업무지침에 의하면 근무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친절한 언행과 공손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형식적인 검문방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문검색 지침에 규정된 불심검문검색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정중한 거수경례

나.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분증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질문

라. 신원확인

-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우수무인과 피검문자의 무인 동일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검문자가 진술하는 인적사항으로 컴퓨터 터미널에 주민조회를 실시하고, 주민조회결과 회보된 지문번호와 피검문자 지문과 대조한다
- 컴퓨터 조회상 지문번호와 피검문자의 지문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①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으므로 책임추궁 ②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전화번호 등 반복질문으로 피검문자의 인적사항 확인 ③ 피검문자의 소지품 등을 조사 신원확인 ④ 심지지문을 채취, 경찰청 감식과에 조회

마. 가방 속과 호주머니 속에 든 휴대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경우 가방은 피검문자에게 열게 하고 휴대품은 제시받아 검색한다.

바. 상황이 급박하든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검문자의 두손을 들게하고 돌려 세운 후 뒤에서 접근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사. 대인 - 대차량 검문검색부에 인적사항, 차량번호 등을 기록 유지한다
(이로 인한 문제 및 앞으로의 개선방향)

아. 검문검색 후의 조치

- 불심점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신병을 확보 및 증거 보유하고 신속히 지휘계통 보고후 임의동행하여 관할 파출소에 인계한다
- 불심점이 없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수경례와 동시 “검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

2. 被檢問者에 대한 不審檢問 類型別 實施

불심검문 경찰관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검문검색)에 근거하여 수상한 자동차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 또는 행하여지려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수배여부를 조회하고 소지품 및 흥기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불심점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임의동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43조(위험방지조치)에 의거하여 운행정지, 운전면허증 제시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 17조의 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에 근거하여 신분 및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불심검문 수단이 실제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설문조사 결과 불심검문 경찰관들은 불심검문을 실시할 때 피검문자가 신분증

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응답자 625명중 83.7%가 “구두로 주민등록번호를 질문하여 파출소에 조회를 의뢰한다”고 응답하였다(표 15). 이 경우 피검문자가 의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답변하였을 경우에는 조회결과를 토대로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답변의 정확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소지품을 검사한다”가 7.3%, “임의동행한다”가 4.7%, 몸수색을 한다가 1.6%로 나타났으며, 0.5%는 그냥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표 15〉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응 행태

구 분	빈 도	비 율
그냥 보낸다.	3	0.5
구두로 주민등록번호를 질문하여 파출소에 조회의뢰	519	83.7
소지품을 검사한다.	45	7.3
몸수색을 한다.	10	1.6
임의동행 한다	29	4.7
기 타	14	2.3
missing	5	
계	625	100.0

나.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불심검문 경찰관은 피검문자가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의동행이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3.4%가 임의동행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5.4%는 소지품을 검사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몸수색을 실시하는 경우는 3.6%로 나타났으며, 기타 방법으로는 28.4%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검문자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임의동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의동행 방법은 그리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며 자칫 인권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발달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됨에 따라 일부 시민들 중에는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검문자가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겨우 9.2%에 불과하였다(표 16).

〈표 16〉 피검문자가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응 행태

구 분	빈 도	비 율
소지품을 검사한다	95	15.4
몸수색을 한다	22	3.6
임의동행 한다	268	43.4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57	9.2
기 타	175	28.4
missing	8	
계	625	100.0

다. 피검문자에 대한 불심검문 유형별 실시정도

불심검문 경찰관이 불심검문검색시 몸수색, 소지품 수색, 신분 및 불심검문 이 유설명, 임의동행 등 불심검문 수단을 중심으로 그 실시정도를 알아보았다(표 17).

〈표 17〉 몸수색 실시 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다	37	9.9
약간 그렇다	180	40.3
중간이다	188	33.6
그렇지 않다	157	12.7
전혀 그렇지 않다	46	3.5
missing	17	
계	625	100.0

평균 ; 2.987

첫째로 불심검문 경찰관은 평상시 불심검문을 할 때 몸수색을 자주 실시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0.3%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중간이다 33.6%, 그렇지 않다 12.7%, 매우 그렇다 9.9%, 전혀 그렇지 않다 3.5%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 평균 2.9로 다소 적게 몸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불심검문 경찰관은 평상시 불심검문을 할 때 소지품검사는 몸수색보다 더 자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소지품검사 실시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3%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33.6%는 중간이라고 응답하여 어느 정도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12.7%, 매우 그렇다는 9.9%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3.5%로 나타났다. 5점 척도에서 평균 2.59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표 18〉 소지품 수색 실시 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다	60	9.9
약간 그렇다	245	40.3
중간이다	204	33.6
그렇지 않다	77	12.7
전혀 그렇지 않다	21	3.5
missing	17	
계	625	100.0

평균; 2.590

셋째로 불심검문검색 경찰관은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할 때 피검문자에게 먼저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혀주기 위하여 경찰관 신분증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5점 척도상 1.7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표 19). 응답자의 67.5%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3.6%는 약간 그렇다고 응답하여 80% 정도는 경찰관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12.6%는 중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9%는 그렇지 않다, 1.1%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현행 검문검색 업무지침에는 검문검색 경찰관이 피검문자에게 경찰관임을 확인해주는 단계를 의무사항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검문자의 대부분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자가 경찰관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복차림의 경찰관이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표 19〉 피검문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제시 실시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다	413	67.5
약간 그렇다	83	13.6
중간이다	65	10.6
그렇지 않다	37	6.0
전혀 그렇지 않다	14	2.3
missing	13	
계	625	100.0

평균; 1.621

넷째로 불심검문 경찰관들은 피검문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기 전에 대체로 피검문자에게 불심검문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반드시 설명하는 경우는 54.7%에 불과했다(표 20). 현행 불심검문검색 지침의 대인검문검색요령에도 불심검문에 대해 피검문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불심검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조사결과, 피검문자에게 불심검문 이유를 설명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의 54.7%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그렇다 28.4%, 중간이다 12.6%, 그렇지 않다 2.9%, 전혀그렇지 않다 1.1%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검문자가 불심검문 경찰관에게 왜 검문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성실히 답변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설명은 피검문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로 검문검색 수단의 하나인 임의동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다소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표 21), “임의

동행을 자주 하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51.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간이다 20.7%, 전혀 그렇지 않다 13.0%, 약간 그렇다 12.3%, 매우 그렇다 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피검문자에게 불심검문이유 설명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다	335	54.7
약간 그렇다	174	28.4
중간이다	77	12.6
그렇지 않다	18	2.9
전혀 그렇지 않다	7	1.1
missing	14	
계	625	100.0

평균; 1.681

이와 같이 검문검색 경찰관들이 임의동행 수단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임의동행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검문자가 이에 불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낯인이라는 100% 확신이 없는 한 임의동행을 자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검문검색 실시 지침에서도 검문검색 후의 조치로 불심점을 발견했을 경우에 임의동행하여 관할파출소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칫 임의동행은 인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 가급적 연루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행태는 자칫 불심검문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보다는 형식주의적으로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임의동행 수단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불심검문검색제도의 실효성과 인권보장측면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여 실시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귀하는 1996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기간동안에 불심검문과정

에서 피검문자를 파출소나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사례가 몇 명이나 됩니까?”라는 설문항목에 대하여 응답자의 83.7%가 10명 이내라고 응답하였다(표 22).

〈표 21〉 임의동행의 실시횟수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다	11	1.8
약간 그렇다	75	12.3
중간이다	126	20.7
그렇지 않다	316	51.9
전혀 그렇지 않다	79	13.0
missing	18	
계	625	100.0

평균; 3.622

〈표 22〉 최근 6개월간 피검문자 임의동행 사례 (96. 1. 1~ 96. 6. 30)

구 분(명)	빈 도	비 율
0	133	23.6
1-5	260	46.2
6-10	78	13.9
10이상	92	16.3
missing	62	
계	625	100.0

라. 피검문자 흥기소지시 대응행태

피검문자가 흥기를 가지고 있을 때의 경찰관의 검문검색행태를 알아 보았다. 현행 검문검색 실시지침에는 무기사용 요령이 규정되어 있다. 우선 검문불응항거자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2차로 공포를 발사한다. 그리고 계속 항거시에는 3차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접 인명에 위해가 없는 대퇴부 아래(발목, 다리 등) 신체부위에 발사한다. 그리고 검문불응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1차로 공포를 발사하고, 계속 도주시 차체의 하부(타이어)에 발사하여 차량을 정지시킨 후 검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사용은 근무 상급자의 정확한 통제 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무기사용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심검문시 피검문자가 흉기 및 무기를 소지하고 검문에 불응하거나 저항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경찰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표 23).

첫째, “총과 같은 무기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치에 대하여 응답자의 59.3%가 매우 그렇다, 21.3%는 약간그렇다, 9.9%는 중간이다, 8.3%는 그렇지 않다, 1.1%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나타나 응답자의 80%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범죄형태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흉포화됨에 따른 경찰관들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표 23〉 피검문자 흉기소지시 강력대응횟수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다	364	59.3
약간 그렇다	131	21.3
중간이다	61	9.9
그렇지 않다	51	8.3
전혀 그렇지 않다	7	1.1
missing	11	
계	625	100.0

둘째, 불심검문시 피검문자가 흉기 및 무기를 소지하고 검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출소나 경찰서로 임의동행 한다는 조치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6.1%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약간 그렇다 27.5%, 중간이다 11.6%, 그렇지 않다 3.8%, 전혀 그렇지 않다 0.7%로 나타났다(표 24). 5점 척도상 평균은 1.6으로 임의동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것은 평상시 임의동행을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이것은 피검문자가 흉기 및 무기를 소지하고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상황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 24〉 피검문자 흉기소지시 임의동행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다	338	56.1
약간 그렇다	165	27.5
중간이다	70	11.6
그렇지 않다	23	3.8
전혀 그렇지 않다	4	0.7
missing	25	
계	625	100.0

평균; 1.647

셋째, 불심검문시 피검문자가 흉기 및 무기를 소지하고 검문에 불응하거나 저항하는 경우에 범인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절대로 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7.1%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약간 그렇다 16.5%, 중간이다 14.7%, 그렇지 않다 13.5%, 전혀 그렇지 않다 8.2% 순으로 나타났으며, 5점척도상 평균은 2.2였다(표 25).

〈표 25〉 피검문자 흉기소지시 경찰관 총기사용금지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다	282	47.1
약간 그렇다	99	16.5
중간이다	88	14.7
그렇지 않다	81	13.5
전혀 그렇지 않다	49	8.2
missing	26	
계	625	100.0

평균; 2.188

넷째, 불심검문시 피검문자가 흉기 및 무기를 소지하고 검문에 불응하는 경우 먼저 파출소나 경찰서에 보고하고 사후 조치를 기다린다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26). 조사결과, 응답자의 29.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간이다 20.3%, 약간 그렇다 19.8%, 매우 그렇다 15.7%, 전혀 그렇지 않다 14.1%로 나타났으며, 5점척도상 평균은 3.1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경찰관들이 피검문자가 흉기 및 무기를 소지하고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상황을 매우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먼저 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6〉 피검문자 흉기소지시 먼저 보고하고 사후조치를 기다림

구분	빈도	비율
매우그렇다	94	15.7
약간 그렇다	118	19.8
중간이다	121	20.3
그렇지 않다	178	29.8
전혀 그렇지 않다	84	14.1
missing	30	
계	625	100.0

평균; 3.067

3. 巡察活動과 不審檢問檢索

불심검문검색은 순찰활동의 한 수단이다. 현재 순찰 방법활동은 소규모 파출소, 대단위 파출소, 이동파출소가 중심이 되어 도보 및 차량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순찰방법활동은 불심검문검색제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상적인 불심검문검색제도는 이러한 순찰방법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순찰활동을 할 때 불심검문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

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한정하였다. 현재 파출소단위의 순찰활동에서 파출소 경찰관 1인당 2교대의 경우에는 12시간, 3교대의 경우에는 1교대 시간에 대략 8 시간 정도 순찰활동을 하게 된다.

파출소와 경찰서의 외근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찰관들은 한 달 동안에 불심검문검색회수가 10회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1.3%로 나타났으며, 11회-20회는 16.8%, 21회-30회 10.6%, 31회-40회는 5.9%, 41회-50회는 7.2%, 51회-60회는 3.0%로 나타났으며 61회 이상인 경우도 35.2%에 달했다(표 27). 이것은 불심검문검색이 경찰관의 외근활동에서 일상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활동유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7〉 한달 동안 불심검문 실시건수

구 분	빈 도	비 율
0-10	133	21.3
11-20	105	16.8
21-30	66	10.6
31-40	37	5.9
41-50	45	7.2
51-60	19	3.0
61이상	220	35.2
계	625	100.0

평균; 63.767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이 순찰할 때마다 최소 1건 이상 불심검문을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았다. 조사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표 28). 응답자의 37.6%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약간 그렇다” 18.9%, “중간이다” 12.0%, “그렇지 않은 편”이 2.1%, 전혀그렇지 않다 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불심검문검색 제도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방법활동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표 28〉 순찰 때마다 최소 1건 이상 실시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다	217	37.6
약간 그렇다	168	18.9
중간이다	109	12.0
그렇지 않은 편	69	2.1
전혀 그렇지 않다	12	0.2
missing	50	
계	625	100.0

이러한 경향은 “순찰시 불심검문을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설문항목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31.3%가 “그렇지 않은 편”, 30.8%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순찰활동을 할 때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표 29〉 순찰시 불심검문을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다	24	4.2
약간 그렇다	97	17.0
중간이다	93	16.3
그렇지 않은 편	179	31.3
전혀 그렇지 않다	176	30.8
missing	56	
계	625	100.0

한편 순찰활동을 할 때 일정한 불심검문검색 실시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았다. 조사 결과 “하루에 몇 건 이상 불심검문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는 설문항목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40.2%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44.6%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14.6%는 중

간정도라고 응답하였다(표 30).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불심검문검색시 달성해야 할 실적을 미리 설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검문검색 업무지침에는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고 난 후에는 피검문자 개인이나 차량 검문검색부에 인적사항, 차량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제도는 자칫 불심검문검색제도의 원래의 목적보다는 실적위주의 형식주의에 치우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표 30〉 하루에 몇 건 이상 불심검문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그렇다	111	19.3
약간 그렇다	120	20.9
중간이다	84	14.6
그렇지 않은 편	139	24.2
전혀 그렇지 않다	117	20.4
missing	54	
계	625	100.0

평균;3.049

4. 不審檢問의 主要 對象

현재 검문검색 업무지침에는 형사, 방법, 보안, 교통 분야의 중점 검문검색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착의, 거동, 언어, 휴대품, 시간, 장소 등을 중심으로 검문검색 착안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불심검문검색 경찰관이 불심검문대상을 선정할 때 주로 어느 연령층을 선정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중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선정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경찰관들은 주로 20대와 30대의 남자를 불심검문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대상선정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1.4%가 20대와 30대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6.1%가 20세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경향은 실제로 범죄자들의 연령별 통계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1995년도 경찰통계에 의하면 전체 범죄검거자 1,450,150명중에서 20세미만은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세-30세는 30%, 30세-40세는 34.9%, 40세-50세는 17.8%, 50세이상은 8.8%로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성별 대상선정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89.6%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제로 범죄자들의 성별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1995년의 경우 범죄검거인원 총 1,450,159명인데 이중 남자는 1,250,532명으로 전체의 86.2%이며, 여자는 199,627명으로 전체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범죄자 199,627명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19세이하 4.3%, 20세-30세 21.6%, 30-40세 39.2%, 40세이상 36%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32).

〈표 31〉 불심검문 피검문자 선정 연령별 구분

구 분	빈 도	비 율
20세 이하	163	26.1
20-30대	383	61.4
40-50대	22	3.5
50대	3	0.5
차이가 전혀 없다	53	8.5
missing	1	
계	625	100.0

〈표 32〉 불심검문 피검문자 선정 성별 구분

구 분	빈 도	비 율
남 성	558	89.6
여 성	2	0.3
차이가 전혀 없다	61	9.8
missing	4	
계	625	100.0

第7節 국민들의 不審檢問檢索에 대한 反應行態

불심검문제도가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등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심검문 대상인 국민들의 협력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그러나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면접조사한 결과, 대부분 국민들의 검문검색에 대한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함께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그동안의 권위주의사회가 민주적이고 열린 시민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의 권위주의시대에는 경찰관의 불심검문검색에 대하여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소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90년대 들어서서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이를 행동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 결과 예전에는 경찰관들의 불심검문검색 행태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관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나아가서는 알잡아 보거나 불신하는 경향도 대두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찰관들의 불심검문검색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불심검문제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및 협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불심검문검색 경찰관 뿐만 아니라 피검문자인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차로 검문검색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불심검문검색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불심검문검색제도나 불심검문검색 경찰관들의 행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반응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국민들의 불심검문검색제도에 대한 협력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피검문자인 국민들의 불심검문에 대한 협력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의 경찰관은 국민들이 불심검문검색에 대하여 비협조적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52.8%가 비협조적인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매우 비협조적이다 21.8%, 보통이다 20.3% 순으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상 평균은 2.1로 나타났다<표 33>.

<표 33> 불심검문에 대한 검문자의 협력정도평가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비협조적이다.	136	21.8
비협조적인 편이다.	330	52.8
보통이다.	127	20.3
협조적인 편이다.	31	5.0
매우 협조적이다.	1	0.2
계	625	100.0

평균; 2.090

둘째, 불심검문중 피검문자와 말다툼을 하는 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가끔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주 발생한다는 응답도 28.6%에 달했다. 이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불심검문검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나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표 34>.

<표 34> 불심검문중 피검문자와의 갈등 정도 : 말다툼을 하는 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자주 발생한다	179	28.6
가끔 발생	348	55.7
중간이다	40	6.4
별로 없다	52	8.3
전혀 없다	6	1.0
계	625	100.0

평균; 1.973

셋째, 피검문자인 국민들은 불심검문검색을 받을 때 불심검문검색 담당 경찰관에게 불심검문 이유와 경찰관인지 아니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가끔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주 발생한다”에도 26.4%가 응답하였다(표 35). 이러한 국민들의 불심검문검색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걸맞게 경찰관의 불심검문검색 운영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심검문검색 경찰관은 먼저 경찰관임을 밝히고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자세가 습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관한 사항을 검문검색 업무 지침의 검문검색 요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35〉 불심검문의 이유와 경찰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자주 발생한다	165	26.4
가끔 발생	330	52.8
중간이다	41	6.6
별로 없다	73	11.7
전혀 없다	16	2.6
계	625	100.0

평균; 2.112

넷째, 불심검문시 피검문자인 국민들은 불심검문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다소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6). 조사 결과,

〈표 36〉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한 피검문자의 협력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저항	38	6.2
비협조적인 편이다	259	42.0
보통이다	186	30.2
협조적인 편이다	122	19.8
매우 협조적이다	7	1.1
실시한적 없다	4	0.6
missing	9	
계	625	100.0

평균; 2.696

응답자의 42%는 “비협조적인 편이다”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이다” 30.2%, 협조적인 편이다 19.8%, 매우 저항 6.2% 순이며, 5점 척도상 평균은 2.6으로 나타났다. 신분증제시 요구에 대한 협력정도는 소지품 검사나 몸수색,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협력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협력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7%가 “비협조적인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22%는 “매우 저항”한다, 13.5%는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표 37).

〈표 37〉 소지품 검사에 대한 피검문자의 협력 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저항	135	22.0
비협조적인 편이다	330	53.7
보통이다	83	13.5
협조적인 편이다	52	8.5
매우 협조적이다	2	0.3
실시한적 없다	12	2.0
missing	11	
계	625	100.0

평균; 2.173

여섯째로 불심검문 경찰관들은 국민들이 불심검문검색을 할 때 몸을 수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분증제시요구나 소지품 검사요구 보다도 더 비협조적이라고 인

〈표 38〉 몸수색에 대한 피검문자의 협력 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저항	235	38.3
비협조적인 편이다	256	41.7
보통이다	69	11.2
협조적인 편이다	21	3.4
매우 협조적이다	3	0.5
실시한 적 없다	30	4.9
missing	11	
계	625	100.0

평균 : 2.008

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1.7%가 “비협조적인 편이다”고 응답하였고, 38.3%는 “매우 저항”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1.25는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표 38).

일곱째로, 경찰관들은 불심검문검색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검분자인 일반국민들이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1%가 “비협조적인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2.6%는 “매우 저항”한다고 응답하였다(표 39). 일반국민들은 불심검문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찰관에게는 자칫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9〉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피검문자의 협력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저항	200	32.6
비협조적인 편이다	277	45.1
보통이다	82	13.4
협조적인 편이다	35	5.7
매우 협조적이다	4	0.7
실시한적 없다	16	2.6
missing	11	
계	625	100.0

평균; 2.046

第 8 節 不審檢問檢索의 効果와 制約要因 評價

불심검문검색제도는 경찰관의 방법활동 및 범인검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이러한 불심검문검색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검문검색은 범죄인에게는 심리적 제약으로 범죄행위를 저지 내지는 둔화시키므로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

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1.7%가 “비협조적인 편이다”고 응답하였고, 38.3%는 “매우 저항”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1.25는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표 38).

일곱째로, 경찰관들은 불심검문검색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검분자인 일반국민들이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1%가 “비협조적인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2.6%는 “매우 저항”한다고 응답하였다(표 39). 일반국민들은 불심검문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찰관에게는 자칫 비협조적인 자세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9〉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피검문자의 협력정도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저항	200	32.6
비협조적인 편이다	277	45.1
보통이다	82	13.4
협조적인 편이다	35	5.7
매우 협조적이다	4	0.7
실시한적 없다	16	2.6
missing	11	
계	625	100.0

평균; 2.046

第 8 節 不審檢問檢索의 効果와 制約要因 評價

불심검문검색제도는 경찰관의 방법활동 및 범인검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이러한 불심검문검색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검문검색은 범죄인에게는 심리적 제약으로 범죄행위를 저지 내지는 둔화시키므로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범죄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범인검거에도 기여하며, 시민들에게는 범죄방지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심검문검색체도가 실제로 범인검거와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불심검문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검문검색체도의 범인검거 및 범죄예방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범인검거효과보다는 범죄예방효과를 더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평상시 불심검문검색의 범인검거 효과에 대하여 응답자의 47.6%가 “약간 효과가 있다”, 17.7%는 “매우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여 65.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효과가 없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17.7%에 불과했다(표 40).

검문검색 경찰관들은 또한 평상시 불심검문검색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하여 44.4%가 “약간 효과가 있다”, 26.0%는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범인검거효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범인검거효과와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응답 경향을 비교한 결과,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범인검거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이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표 43>,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체검문검색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찰관들이 평상시 범인검거효과와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40> 불심검문의 범죄검거효과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효과가 크다	110	17.7
약간 효과가 있다	296	47.6
중간이다	106	17.0
효과가 없는 편이다	94	15.1
전혀 효과가 없다	16	2.6
missing	3	
계	625	100.0

〈표 41〉 불심검문의 범죄예방효과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효과가 크다	162	26.0
약간 효과가 있다	276	44.4
중간이다	113	18.2
효과가 없는 편이다	59	9.5
전혀 효과가 없다	11	1.8
missing	14	
계	625	100.0

〈표 42〉 범인검거효과와 범죄예방효과

범인검거효과 \ 범죄예방효과	매우효과	약간효과	중간이다	효과가 없	전혀 효과	합 계
	가 크다	가 있다		는 편이다	가 없다	
매우 효과가 크다	91 (56.2)	15 (5.4)	3 (2.7)	1 (1.7)	0 (0)	110 (17.7)
약간 효과가 있다	62 (38.3)	194 (70.3)	29 (25.7)	9 (15.3)	1 (9.1)	296 (47.6)
중간이다	5 (3.1)	43 (15.6)	51 (45.1)	6 (10.2)	1 (9.1)	106 (17.0)
효과가 없는 편이다	3 (1.9)	23 (8.3)	29 (25.7)	39 (66.1)	0 (0)	94 (15.1)
전혀 효과가 없다	1 (0.6)	1 (0.4)	1 (0.9)	4 (6.8)	9 (81.8)	16 (2.6)
합 계	162 (100.0)	276 (100.0)	113 (100.0)	59 (100.0)	11 (100.0)	622 (100.0)

〈표 43〉 일제검문검색효과와 범인검거효과

범죄검거방효과 검문검색효과	매우효과 가 크다	약간 효과 가 있다	중간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합 계
매우 효과가 크다	43 (39.1)	21 (7.1)	3 (2.8)	2 (2.1)	0 (0)	69 (11.1)
약간 효과가 있다	34 (30.9)	159 (53.7)	28 (26.4)	10 (10.6)	0 (0)	231 (37.1)
중간이다	11 (10.0)	60 (20.3)	44 (41.5)	12 (12.8)	0 (0)	127 (20.4)
효과가 없는 편이다	16 (14.5)	50 (16.9)	25 (23.6)	63 (67.0)	5 (31.3)	159 (25.6)
전혀 효과가 없다	6 (5.5)	6 (2.0)	6 (5.7)	7 (7.4)	11 (38.8)	36 (5.8)
합 계	110 (100)	296 (100)	106 (100)	94 (100)	16 (100)	622 (100.0)

〈표 44〉 일제검문검색효과와 범죄예방효과

범죄예방효과 검문검색효과	매우 효과 가 크다	약간 효과 가 있다	중간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매우 효과가 크다	54 (33.3)	11 (4.0)	2 (1.8)	2 (3.4)	0 (0)
약간 효과가 있다	53 (32.7)	146 (52.9)	27 (23.9)	4 (6.8)	1 (9.1)
중간이다	23 (14.2)	59 (21.4)	38 (33.6)	6 (10.2)	0 (0)
효과가 없는 편이다	23 (14.2)	54 (19.6)	39 (34.5)	4 (69.5)	2 (18.2)
전혀 효과가 없다	9 (5.6)	6 (2.2)	7 (6.2)	6 (10.2)	8 (72.7)
합 계	162 (100)	276 (100)	113 (100)	59 (100)	11 (100)

한편 실제로 불심검문검색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범인을 검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6년 1월부터 1996년 6월말까지 6개월 동안 불심검문검색을 통하여 몇 명의 범인을 검거하였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의 40.7%는 한 건도 없었으며, 1건은 15.9%, 2건은 11.0%, 3건은 9.2%, 4건은 4.0%, 5건은 5.2%, 6건은 13.9%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91년에 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과출소난위 방법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이 조사에 의하면 6개월간의 범인 검거실적에 대하여 응답자 중 43.8%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였으며, 14.5%는 1명의 범인을 검거한 경험이 있으며, 2명을 검거한 경찰관은 17.9%, 3명 검거 경찰관은 11.1%, 4명 검거 경찰관은 2.5%이며 5명 이상 검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5.9%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불심검문이 범인검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45> 6개월동안 불심검문으로 인한 범인검거건수

구 분	빈 도	비 율
0	225	40.7
1	88	15.9
2	61	11.0
3	51	9.2
4	22	4.0
5	29	5.2
6	77	13.9
missing	72	
계	625	100.0

한편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현행 불심검문검색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들의 비협조, 법률상 강제규정미비, 장비미비, 너무 빈번한 일체검문검색 횟수 등을 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비협조나 임의동행문제는 검문검색하는 경찰관 스스로가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검문검색 방법이나 행태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46〉 불심검문검색제도의 문제점

구 분	1 순위		2 순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장비 미비	179	29.3	1	0.2
너무 빈번한 일체검문 검색	134	22.0	16	2.7
시민들의 비협조	204	33.4	53	9.0
불심검문 인력부족	21	3.4	30	5.1
법률상 강제규정 미비(임의동행규정 등)	64	10.5	278	47.0
불심검문 경찰관의 타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	8	1.3	159	26.9
검문효과가 별로 없어서	0	0	55	9.3
missing	15		33	
계	625	100.0	625	100.0

VII. 不審檢問檢索制度 改善方案

第 1 節 基本方向

불심검문검색제도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검문검색 업무지침의 목적과 방침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검문검색 업무지침은 “국민접점 치안활동인 검문검색 업무를 개선하여 검문검색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함과 동시에 근무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대경찰의식을 제고하고 검문검색을 현장 치안의 핵으로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 불심검문검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불심검문검색이 실시되는 현장중심의 불심검문검색 체계를 갖추고, 현장적응적이며 전략적인 검문검색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로 일제검문검색은 경찰조직 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전략적이며 지역사회 지향적 검문검색 체계를 갖추으로써 검문검색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로 불심검문검색 과정에서 조희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검문검색의 효과를 높이고 가능한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불심검문검색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바탕을 두고 실시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피검문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다섯째로 불심검문검색에 활용되는 장비를 보강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검문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第 2 節 現場即應的 檢問檢索 體系確保

1. 現場 中心의 照會體系

현장 즉응적 조회체계란 다단계 조회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에서 바로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에서 파출소나 경찰서에 무전기로 조회를 의뢰하면, 파출소나 경찰서의 근무자가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무전기 통신으로 현장의 불심검문검색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검문검색 조회절차는 조회에 많은 시간을 걸리게 하고, 무전기나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가 고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아예 조회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조회장비를 고도화시켜야 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순찰차 컴퓨터단말기는 이러한 현장 즉응적 조회장비로서 그 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개선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문소에도 조회용 컴퓨터단말기를 설치하여 파출소나 경찰서에 조회를 의뢰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직접 검문검색 현장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트북과 같은 휴대용 컴퓨터와 조회정보 디스켓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회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회정보를 받아 피검문자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地域特性을 反映한 戰略的 檢問檢索 實施

검문검색 경찰관과 장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문검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문검색 지역의 치안여건과 방법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평상시에 지역사회 지향적 방법활동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면 검문검색 활동도 지역의 실정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파출소나 경찰서 등

일선 경찰기관에 불심검문검색에 관한 권한을 좀더 부여하고,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해야 하는 거점을 찾아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第3節 一濟檢問檢索制度의 改善方案

1. 警察組職間 役割調整과 協力 네트워크 구축

일제검문검색제도는 평상시의 불심검문검색제도와는 달리 검문검색의 목적과 지역적 범위에 따라 일정기간 검문검색에 참여하는 경찰조직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서, 과출소 등 경찰조직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체계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일제 검문검색은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지방경찰청과 지방경찰서가 실시하고 있다.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제검문검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일제 검문검색을 주관하는 상위 경찰조직은 관련된 하위 경찰조직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일제검문검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검문검색의 실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전략과 방침은 하위 경찰조직에 위임하여 지역의 치안특성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책임있는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일제검문검색에 대한 논의에서는 일제검문검색제도가 획일적인 지시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일제 검문검색에 참여하는 조직들 간에는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기능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일제검문검색 활동이 지역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문검색 활동을 분권화하여 현장에서 검문검색 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경찰관에 대하여 자율기능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기동화, 광역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인접 경찰관서와 권역별 합동검문을 실시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다.

일선 경찰기관에 불심검문검색에 관한 권한을 좀더 부여하고,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해야 하는 거점을 찾아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第3節 一濟檢問檢索制度의 改善方案

1. 警察組職間 役割調整과 協力 네트워크 구축

일제검문검색제도는 평상시의 불심검문검색제도와는 달리 검문검색의 목적과 지역적 범위에 따라 일정기간 검문검색에 참여하는 경찰조직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서, 과출소 등 경찰조직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체계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일제 검문검색은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지방경찰청과 지방경찰서가 실시하고 있다.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제검문검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일제 검문검색을 주관하는 상위 경찰조직은 관련된 하위 경찰조직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일제검문검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검문검색의 실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전략과 방침은 하위 경찰조직에 위임하여 지역의 치안특성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책임있는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일제검문검색에 대한 논의에서는 일제검문검색제도가 획일적인 지시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일제 검문검색에 참여하는 조직들 간에는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기능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일제검문검색 활동이 지역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신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문검색 활동을 분권화하여 현장에서 검문검색 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경찰관에 대하여 자율기능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기동화, 광역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인접 경찰관서와 권역별 합동검문을 실시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다.

2. 戰略的, 問題解決 指向的 檢問檢索 強化

전략적인 불심검문이란 주요 거점지역을 검문검색함으로써 마구잡이식 검문을 지양하고 검문조장에 의한 거동수상자를 선별하여 검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제검문검색의 특정 목적에 따라 한정된 경찰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검문검색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략적인 일제검문검색이란 적극적인 문제해결 지향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표적검문검색(targeted)과 지향검문검색(directed)도 이러한 접근방법에 포함된다.

가. 검문목적의 차별화, 명확화

일제검문검색은 평상시의 검문검색으로는 효과적으로 검문검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검문검색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세부적으로 한정하여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일제검문검색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제검문검색을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없이 일상적인 검문검색의 연장선상에서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일제검문검색의 효과보다는 경찰자원의 집중 동원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특정 목적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검문자를 일정한 범위로 한정할 수 있으며 검문검색 경찰관들의 직무피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제검문검색의 기대효과와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횟수와 시간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제검문검색을 전략적으로 특정 목적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불심검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검문검색 횟수 적정화

원래 일제검문검색은 특정 경찰목적에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이고 종합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검문검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검문검색이 월 2회 혹은 4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일제검문검색의 특수성이 완화되고, 평상시의 검문검색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상화, 관례화 되기 쉽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지역 경찰서의 경우 월 4회 정도의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불심검문검색을 빈번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제검문검색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일제검문검색을 의례적인 근무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결과 검문검색 건수위주의 형식주의적 검문검색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현행 일제검문검색이 너무 빈번하게 정기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근무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일제검문검색 실시 횟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일제검문검색의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제검문검색제도는 특정한 목적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검문검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할 때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일제검문검색의 실시횟수를 적정화시키면 경찰관들의 참여의식과 사명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동원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검문검문을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상시의 검문검색 및 방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전략적 인력배치

일제검문검색 실시기간 중 경찰인력을 지역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치안환경을 조사하고 검문검색의 사각지대나 범죄예상지역 등을 파악해야 한다. 검문검색 주관 경찰조직은 이러한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지구에는 인력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검문검색 근무방법은 검문검색 현장의 상황에 적합하게 고정 근무, 유동 근무, 2시간 단위의 릴레이식 순환근무 등 다양한 근무방식을 실시해야 한다. 1개조당 경찰관의 규모도 검문검색 현장의 상황에 적합하게 설정하면 된다. 현행 검문검색 업무지침은 방법기능의 경우에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근무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표 47). 이 업무지침은 도시지역의 경우에 릴레이식 순환이동 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업무지침은 이러한 근무방법으로 ① 고정근무를 지양하고 인접 배치 방소를 동일권역으로 묶어 순환이동근무 ② 이동간 불심검문으로 순찰효과를 거양하고 시차별 장소이동으로 생동감있는 근무분위기 조성 ③ 정복근무자는 취약지점에서 머물러 지키는 거점, 고정근무 병행 ④ 사복근무자는 유동하면서 주민속에 파고 들어가 범죄정보 입수, 범죄꾼을 찾아가 검거하는 프로근성 발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서는 고정근무 방식을 채택하여 취약장소 “목” 거점에 2-4인 1조로 정-사복 혼성 고정근무와 근무자중 1/2은 근무지 반경 50-100미터 이내의 가시거리내 유동근무를 제시하고 있다.

〈표 47〉 근무시간에 따른 탄력적 경력 운용(예시)

시 간	도시지역	유용가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도 시	22:00 ~ 24:00	23:00 ~ 01:00	20:00 ~ 22:00

순 차	배 치 시 간	동 원 경 력
1 차	19:00~24:00(2시간)	지방청, 경찰서내근, 파출소, 전경대, 기동대
2 차	21:00~23:00(2시간)	기동대, 형기대, 전경대, 파출소, 방법원, 외근형사
3 차	23:00~01:00(2시간)	방법순찰대, 파출소, 방법원, 형기대, 외근형사

자료 : 경찰청, 검문검색 업무지침

라. 소내 근무자 보충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할 동안에는 조회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조회를 하지 않고 파출소의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파출소의 소내 근무자 1명이 조회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파출소 소내 근무자는 조회업무외에도 파출소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내 근무자를 한 두명 더 늘릴 필요가 있다.

3. 地域治安 特性에 適合한 檢問檢索戰略

일제검문검색은 검문검색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일선 현장의 치안특성에 바탕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경찰활동은 파출소와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파출소나 경찰서 등은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경찰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도 다른 경찰조직보다 강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은 일제검문검색의 실시목적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은 파출소와 경찰서 등 지역경찰에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역의 치안환경을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검문검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적인 통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제검문검색도 순찰방법활동과 마찬가지로 지역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 등은 일제검문검색에 참여하는 경찰조직들 간의 조정 및 협력체제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찰청의 검문검색 업무지침은 지역별 전략 검문검색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두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지방청, 경찰서별 치안수요 분석에 의거 검문대상, 검문시간, 검문방법 등 자체 검문검색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선 관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동화—광역화되고 있는 범죠행태에 대처하기 위해 인접 경찰관서와 권역별 합동 검문 실시 등이다.

第 4 節 不審檢問檢索 裝備의 尖端化, 高度化

1. 基本方向

불심검문검색 장비는 크게 다음 두가지 사항을 갖추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는 불심검문검색의 조회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조회절차를 간소화 함으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전기와 무선통신체계를 개선하고, 조회용컴퓨터단말기의 성능을

일제검문검색은 검문검색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일선 현장의 치안특성에 바탕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경찰활동은 파출소와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파출소나 경찰서 등은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경찰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도 다른 경찰조직보다 강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은 일제검문검색의 실시목적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은 파출소와 경찰서 등 지역경찰에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역의 치안환경을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검문검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적인 통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제검문검색도 순찰방법활동과 마찬가지로 지역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 등은 일제검문검색에 참여하는 경찰조직들 간의 조정 및 협력체제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찰청의 검문검색 업무지침은 지역별 전략 검문검색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두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지방청, 경찰서별 치안수요 분석에 의거 검문대상, 검문시간, 검문방법 등 자체 검문검색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선 관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동화—광역화되고 있는 범죠행태에 대처하기 위해 인접 경찰관서와 권역별 합동 검문 실시 등이다.

第 4 節 不審檢問檢索 裝備의 尖端化, 高度化

1. 基本方向

불심검문검색 장비는 크게 다음 두가지 사항을 갖추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는 불심검문검색의 조회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조회절차를 간소화 함으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전기와 무선통신체계를 개선하고, 조회용컴퓨터단말기의 성능을

높여야 하며, 휴대 조회용 컴퓨터나 순찰차 컴퓨터단말기(MDT) 등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둘째는 불심검문검색 과정에서 피검문자인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지 않고도 효과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회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주어야 하며, 가능한 직접 피검문자를 대면하지 않고도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 예컨대 순찰차 컴퓨터단말기(MDT),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등을 개선하여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오토바이 조회, 지문정보 조회, 주민조회시 거주지 이동정보 조회 등 검문검색의 환경 변화에 따른 조회정보체계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해야 한다.

넷째로 전자주민증시대와 무선이동통신의 발달에 따른 검문검색 기법과 장비를 개발하여 정보화시대의 검문검색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2. 無電機 通信 體系 改善

현행 초단파통신망(VHF) 체계에서 주파수공용무선망(TRS) 체계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하나의 채널로 동시에 한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아날로그 TRS방식에서 하나의 채널로 다수인이 동시 사용토록 하여 제한된 주파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날로그의 단점을 보완한 디지털 TRS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무선망을 이용한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지휘관이 어느 장소에 위치하건 하나의 무전기로 휘하 전 직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파수 공용무선망을 대도시부터 구축하고, 인접 도시와 농어촌 지역까지 점차적으로 확대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994년에 지급된 12,000대와 향후 예정된 3,000대를 수용하기에는 현재 75 channel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널을 더 확대해야 한다. 현재 800 MHz 대역에서 자가망으로 확보된 200채널 중 현재 확정된 채널은 125개이고, 미확정권 채널은 75개이다.

그리고 구형 무전기를 성능이 우수한 신형 무전기로 대체하고 검문검색 경찰관에게 가능한 한 대씩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3. 巡察車 컴퓨터 단말기 (M.D.T) 改善 및 擴大實施

그동안 송과경찰서를 대상으로 MDT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결과, 범인검거효과와 현장즉응효과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검문현장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MDT시스템을 개선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MDT 장비의 성능과 규모를 개선해야 하며, 첨단장비를 갖춘 순찰차량을 설계하여 전면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순찰차 컴퓨터 단말기는 규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기존의 112 순찰차에 부착시키는 경우에는 순찰차내 공간이 부족하고 사고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112 순찰차는 고장이 자주발생하고 성능이 떨어져 검문검색시 불심점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순찰차량에 감시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검문검색에 따른 현장조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현재 조회시는 1회 1대만이 가능한 터미널변환 방식을 다수가 동시에 운용 가능한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MDT방식의 확대는 정확한 채널운용상태를 분석과 검증 후에 추진해야 한다. 채널분제는 TRS방식을 디지털시스템으로 구축할 경우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장치 디지털 주파수공용무선망을 활용하여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차량용 데이터 터미널의 기능을 현재 주민 및 차량번호를 입력, 조회하는 방식을 전자주민카드 내용을 자동 판독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확대운용하고 무선망을 자료(수배자, 수배차량)전송 매개체로 한 휴대용 조회기를 도보경찰관에게 제공하여 이동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여 치안역량은 강화될 것이다.

또한 각종 차량에 노트북 컴퓨터를 설치, 경찰종합정보체계의 컴퓨터망에 접속 이동하면서 문서, 송수신 등 업무수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전 순찰차량을 대상으로 무전기에 음성지령보다 데이터 지령을 활성화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문조회도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車輛番號自動判讀시스템 改善 및 擴大 實施

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은 피검문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차량소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차량번호자동판독기의 성능을 개선하여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을 확대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5. 照會用 컴퓨터 性能 向上 및 擴大設置

첫째로 모뎀의 처리속도를 2400 bps 에서 4800 bps 혹은 9600 bps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조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현재 파출소에는 단말기가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치안수요가 크고 조회량이 많은 파출소의 경우에는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조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회인력도 치안수요가 높은 시간대나 기간에는 1명 정도 더 추가로 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년퇴임한 경찰관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파출소 검문소 중에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단말기를 설치하여 검문소에서 직접 피검문자에 대한 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파출소, 검문소에 운용중인 286컴퓨터를 486 또는 586으로 기종을 교체하여 용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로 경찰관들의 컴퓨터처리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파출소에서 외부순찰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내 근무자를 1명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조회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6. 携帶用 照會 컴퓨터 시스템 開發 및 適用

휴대용 조회 컴퓨터(H.D.T)는 현장에서 검문검색을 할 때 수배정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검문자의 수배여부 등을 즉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 경우에 경찰청이나 지방청에서 수배정보를 수시로 현장에 제공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근정보를 UP-- DATA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휴대용 조회 컴퓨터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바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조회용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96년 현재 서울지방청은 15개 경찰서에 시험운영하고 있다.

第 5 節 國民과의 協力關係 形成

1. 警察官의 不審檢問方法과 行態變化

불심검문검색은 국민들을 피검문자로 선정하여 정지, 질문, 소지품 및 몸수색, 임의동행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피검문자인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불심검문검색은 바쁜 피검문자의 활동시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피검문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피검문자인 국민들의 협력이 없이는 검문검색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국민들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문검색 경찰활동과 경찰관들의 행태가 먼저 변화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들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검색을 할 때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검문검색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할 때 검문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회절차와 조회장비를 개선하여 조회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휴대용 조회 컴퓨터(H.D.T)는 현장에서 검문검색을 할 때 수배정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검문자의 수배여부 등을 즉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 경우에 경찰청이나 지방청에서 수배정보를 수시로 현장에 제공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근정보를 UP-- DATA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휴대용 조회 컴퓨터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바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조회용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96년 현재 서울지방청은 15개 경찰서에 시험운영하고 있다.

第 5 節 國民과의 協力關係 形成

1. 警察官의 不審檢問方法과 行態變化

불심검문검색은 국민들을 피검문자로 선정하여 정지, 질문, 소지품 및 몸수색, 임의동행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피검문자인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불심검문검색은 바쁜 피검문자의 활동시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피검문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피검문자인 국민들의 협력이 없이는 검문검색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국민들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문검색 경찰활동과 경찰관들의 행태가 먼저 변화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들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검색을 할 때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검문검색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불심검문검색을 실시할 때 검문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회절차와 조회장비를 개선하여 조회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피검문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불심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M.D.T 시스템이나 AVNI시스템 등의 검문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숙박업소, 음식점, 유흥가, 유원지 등의 주정차 차량이나 주유소 등의 출입차량에 대하여 차량을 조회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형식적인 실적위주의 불심검문검색을 지양하고 전략적, 실질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소위 마구잡이식, 무작위적 검문검색 행태를 지양하고 불심검문검색의 실시 목적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검문대상을 선별적이고 전략적으로 선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청의 검문검색 지침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목”을 잘 선정하여 검문검색 효과도 높이고 무작위적 피검문자 선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출·퇴근등 교통혼잡시간대나 정체구간에서는 가급적 차량검문을 자제하여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積極的인 弘報

피검문자는 일단 불심검문을 받게 되면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바쁜 생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피검문자로 하여금 불심검문에 협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검문자로 하여금 불심검문의 중요성과 국민 협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하나로 텔레비전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공익광고 형태로 주기적으로 불심검문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범죄없는 치안환경을 만든다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러한 불심검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광고할 필요가 있다.

第 6 節 不審檢問制度에 관한 立法論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불심검문제도에 관한 해석론(제3장)에서 제기되었던

셋째는 피검문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불심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M.D.T 시스템이나 AVNI시스템 등의 검문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숙박업소, 음식점, 유흥가, 유원지 등의 주정차 차량이나 주유소 등의 출입차량에 대하여 차량을 조회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형식적인 실적위주의 불심검문검색을 지양하고 전략적, 실질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소위 마구잡이식, 무작위적 검문검색 행태를 지양하고 불심검문검색의 실시 목적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검문대상을 선별적이고 전략적으로 선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청의 검문검색 지침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목”을 잘 선정하여 검문검색 효과도 높이고 무작위적 피검문자 선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출·퇴근등 교통혼잡시간대나 정체구간에서는 가급적 차량검문을 자제하여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積極的인 弘報

피검문자는 일단 불심검문을 받게 되면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바쁜 생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피검문자로 하여금 불심검문에 협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검문자로 하여금 불심검문의 중요성과 국민 협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하나로 텔레비전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공익광고 형태로 주기적으로 불심검문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범죄없는 치안환경을 만든다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러한 불심검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광고할 필요가 있다.

第 6 節 不審檢問制度에 관한 立法論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불심검문제도에 관한 해석론(제3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立法論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1. 일제(一切)검문

제3장에서 지적하였듯이 일제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으로는 어디까지나 “① 수상한 거동 및 ② 범죄와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일제검문을 하는 것은 경찰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일제검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제검문이 허용될 관련범죄는 1) 소요사태의 진압 또는 예방을 위하여 「集會 및 示威에 관한 법률」위반범죄, 2) 테러범죄, 특수강도죄, 인질범죄 등 重犯罪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1)의 集示法違反犯罪에 있어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에서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에 부가하여 “소요발생지역 또는 소요예상지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제검문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2)의 重犯罪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일반인에 대한 일제검문의 근거규정을 둘 수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11조 참조).

2. 停止를 위한 實力行使

불심검문의 방법 중 停止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은 그 법적 성격을 임의처분 내지 규범적 임의처분으로 이해하여, 정지를 위한 실력행사, 즉 경찰관의 강제정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불심검문의 기본적 성격을 임의처분으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불심검문의 첫단계가 되는 정지를 강제할 수 없다면 불심검문제도 본래의 목적인 質問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따라서 여타의 불심검문방법은 임의처분에 속한

다고 하더라도 일단 불심검문이 시작될 停止 만큼은 강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특히 자동차검문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走行 중인 자동차이고,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인 한, 그 안에 있는 탑승자가 거동수상자인가를 외부에서 판별할 수 없으므로, 불심검문을 하기 위하여 우선 자동차를 강제로라도 “정지”시키는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다만 강제정지권에 시간적 제약을 가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상세한 입법례로서는 미국법률협회의 起訴認否前節次 模範法典 제110조 제2항 참조).

3. 소지품검사에 있어서 外表檢査와 開披行爲

경찰관이 검문에 따른 소지품검사를 함에 있어서 흉기소지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경찰관 또는 제3자의 生命·身體의 安全과 범죄의 예방 및 제지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외표검사와 개피행위, 더욱 나아가서는 흉기의 압수까지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해석상의 이문을 拂拭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그 요건 및 권한을 입법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길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복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人命·身體에 危害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緊急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위의 제지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소지한 흉기 등의 강제적 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동 조항을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하고 소지한 흉기를 경찰관서에 임시로 領置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다.

4. 흉기이외의 물건에 대한 所持品檢査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에서는 불심검문시 소지품검사의 대상을 “흉기”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 위조지폐, 음란물, *장물과 같은 禁制品 기타 흉

기 이외의 물건을 해석상 소지품검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범죄의 진압과 예방이라는 불심검문제도의 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필요성이 다대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明文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盜品 또는 禁制品이 발견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꺾문대상인 사람의 소지품이나 차량의 내부(트렁크포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영국의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 제1조 참조).

5. 自動車檢問

정지를 위한 실력행사의 입법본에서 언급했듯이 자동차검문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走行 중인 자동차라는 특성에 비추어, 환연하자면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인 한 그 안에 있는 탑승자가 기동수상자인가의 여부를 외부에서 판별할 수 없으므로, 불심검문을 하기 위하여 우선 자동차를 강제로라도 “정지”시키는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자동차의 選別停止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검문에 관한 한 일제검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그 근거와 요건 및 한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것이 요청된다. 또 현행법상 자동차검문시 트렁크내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또는 개인소유의 대형 차량의 내부에 대한 검사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자동차검문에 관한 입법례는 미국법률협회의 起訴認否前節次 模範法典 제110조제2항 (2)(3) 및 영국의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 제1조 제2항, 제2조 등 참조).

6. 住民登録法上 身元確認을 위한 同行要求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에 의하면, 경찰관은 직무수행상 신원확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동제1항),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타 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범죄혐의가 있으

면 신원확인을 위하여 관계관서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동행요구에는 당해인이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주민등록법상의 同行要求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후자는 強制處分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강제처분이라는 해석에 입각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동행의 시간제한과 통지기회의 부여의무 등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을 주민등록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입법례로서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c 및 불란서 형사소송법 제61, 63조 참조).

VIII. 맺는 말

이 연구에서는 불심검문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과 아울러 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불심검문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불심검문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법적 고찰결과개선방안의 제시는 전장 제6절에서 입법론이라하여 제시해 보았고, 실태분석의 결과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불심검문 운영체계는 아직 현장즉응적인 조회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다단계의 조회과정에서 조회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시범운영되고 있는 송파구의 순찰차 컴퓨터단말기 시스템은 현장에서 피검문자를 대면하지 않고도 직접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심검문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일제검문검색에 대해서 경찰관들은 대부분 검문검색 횟수와 동원인력 규모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며, 자칫 실적위주의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일제검문검색계획 및 지침은 상급 경찰관서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문검색 현장에 대한 상황적응적인 검문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리고 일제검문시 조회량이 급증함에 따라 현 초단파(VFH)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장애가 자주 발생하며, 조회용 컴퓨터 터미널의 조회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셋째, 조회용 컴퓨터단말기, 무전기 등 불심검문 장비는 고장장애를 자주 일으키며, 시범운영되고 있는 MDT시스템과 AVNI시스템도 장비 자체의 결함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장비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불심검문 조치를 실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불심검문과정에서 조회시간이 지체되는 데에는 이러한 장비의 문제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조회실태를 분석한 결과 과출소나 경찰서 등 지역에 따라 조회량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조회체계의 복잡성, 조회장비 및 기술의 결합, 소내 근무자 1인의 업무량 과다에 따른 조회업무 수행 한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조회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은 방법순찰활동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었다. 불심검문 경찰관들의 검문행태에 대해서는 불심검문 법규 및 방법에 대한 교육체계 미흡, 피동적이고 형식적인 근무행태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불심검문 경찰관들의 검문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문검색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조회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소지품 검사와 몸수색, 임의동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검문자가 흥기를 소지하고 불심검문에 불응하거나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총기 등 무기사용과 임의동행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불심검문 경찰관들은 검문대상을 선정할 때 20대와 30대의 남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일선 경찰관들은 피검문자인 국민들이 불심검문에 대해 대체로 비협조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불심검문중 피검문자와 말다툼 등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경찰관들의 소지품조사, 몸수색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일선 경찰관들은 불심검문의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일체검문검색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선 경찰관들은 현행 불심검문제도의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비협조, 법률상 강제규정 미비, 장비미비, 너무 빈번한 일체검문검색 횟수 등을 주로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불심검문제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불심검문제도는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안으로 다음 몇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불심검문이 실시되는 현장중심의 조회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치안 특성을 반영하는 전략적 검문검색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적응적 검문검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는 일제검문검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조직간 역할 조정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문제해결 지향적 검문검색 강화, 검문검색 횟수 적정화, 전략적 인력배치, 지역치안 특성에 적합한 검문검색 전략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무전기 통신체계 개선, 순찰차 컴퓨터 단말기 개선 및 확대실시, 차량번호자동판독시스템 개선 및 확대실시, 조회용 컴퓨터 성능향상 및 확대 설치, 휴대용 조회컴퓨터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등 불심검문검색 장비를 첨단화, 고도화하여 불심검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로 불심검문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검문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피검문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불심검문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경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불심검문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 및 불심검문 전략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불심검문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방송 및 언론 등을 활용하여 불심검문제도에 관해 적극적인 홍보와 광고(공익광고)를 실시하여 불심검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주로 검문검색 일선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피검문대상인 일반국민들의 불심검문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검문검색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본방향만 제시하는데 그쳤을 뿐 구체적인 세부전략과 지침을 충분히 개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 강구진,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관한 고찰(上.下)”, 경찰고시, 1983. 6. 8.
-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3.
- 강구철, “즉시강제로서의 불심검문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 1982. 6.
- 강대형, “파출소단위 방법활동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2권 제1호, 1991
- 강동욱, 불심검문, 고시원, 1994.
- 경찰대학치안연구소, 「치안여건의 차이에 따른 방법활동체계 연구」, 1996
 , 「경찰장비 관리 · 운용실태 분석」, 1995
- 경찰청, 「경찰백서」, 1995
- 경찰청, 업무편람, 8-1. 검문검색 업무지침, 1995.
- 국회사무처, 제152회 국회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1991.1.31), 제10호(1991.2.7).
- 국회사무처, 제17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0호.
- 김형청,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1호, 1991
- 배성수, “불심검문”, 수사연구, 1989. 9.
- 백형구, 현대수사법의 기본문제, 육법사, 1985.
- 법무부, 개정 형법·형사소송법 해설, 1996. 6.
- 석종현, 일반행정법(下), 삼영사, 1990면.
- 신동운,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교통검문”, 고시연구, 1993. 10.
- 이상안 외, “파출소 방법활동체계 개선방안”, 「치안논총」제 1집, 치안연구소, 1995.
- 이용훈, “불심검문의 남용”, 사법행정, 1967. 5.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4.
- 임학순, “파출소의 순찰활동 실태와 개선방안”, 「수사연구」, 1995. 2

- 정경모, “경찰무선통신망 구축방안에 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제5호, 치안연구소.
- 정동욱, “불심검문”, 고시계, 1989. 3.
- 차용석, 형사소송법연구, 박영사, 1982.
- 치안본부, 「일본경찰」, 외국 경찰제도 연구총서, 1987
 , 「미국경찰」, 외국 경찰제도 연구총서, 1987
 , 「경찰관 의식조사 보고서」, 1990
- 표성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과 강제처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출소단위 방법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1991
 ,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1991
 ,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의 범죄대처능력 향상방안」, 1990
 ,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1995
 , 「범죄예방 정책과 방향」, 제 13회 형사정책세미나, 1994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199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활동과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1993.
 , 파출소단위 방법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1991.
- 한인달, “직무질문을 둘러싼 제문제”,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제8집, 1991.
- 홍순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熊谷 弘 外 3人編, 捜査法大系 I, 日本評論社, 1988.
- 渡邊 修, 職務質問の研究, 成文堂, 1985.
- 三井 誠 外 3人, 刑事手續(上), 1988.
- 平場安治, 改訂 刑事訴訟法講義, 1954.
- 團藤重光, 條解 刑事訴訟法(上), 1949.
- 田宮 裕 編, 刑事訴訟法 I, 有斐閣, 1975.
- 松尾浩也, 刑事訴訟の原理, 東京大學出版會, 1974.

- 戸基男・宮脇 介，新版 注解 警察官職務執行法，立花書房，1989.
- 竹島久和士，判例中心 警察権限法解説，啓正社，1979.
- 日本 実務法令研究会編，警察権限実務集，警察時報社，1992.
- 下村幸雄，“職務質問”，「判例演習講座 刑事訴訟法」(井戸田 侃 編)，1972.
- 阪村幸男，“所持品検査の法理”，海上保安大 schools 昭和43年度 研究報告 第1部.
- 出射義夫，“自動車検問の法的根拠”，日沖博士還暦祝賀論文集 過失犯(2)，有斐閣，1972.
- 佐藤美樹，“シンシア・ブルーム「フランス及びアメリカにおける警察の捜査段階での個人の自由」”，關西大學大学院，〈法學ジャーナル〉54，1989.9.
- 團藤重光，“職務質問 適法性 限界”，判例時報 3.
- 上屋正三，“イギリス警察の停止命令及び捜査権”，警察研究，1986. 5.
- 井上正治，“最近の警察権行使の實態”，法律時報，1988. 4.
- 渡部保夫，“自動車 せい検問に関する最高裁決定”，ジュリスト 729.
- 山下重信，“任意同行と任意出頭(中)”，警察學論集，1974. 3.
- 渥美東洋 編，刑事訴訟法基本判例解説，三嶺書房，1989.
- 日本 判例時報，615；690；720；772.
- 日本 第二國會 制定法審議要録.
- Bernd Schmalhausen, Die Razzia, 1980.
- D. Walter/H. Zachert, “Die Razzia”, Kriminalistik, 1967. 11.
- David A. Jones,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Little, Brown and Co.:Boston),1981.
-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 ordnung, Gerd Pfeiffer(Hrsg.), 3. Aufl., 1993.
- Langworthy Robert H. & Travis Lawrence F., Policing in America, Musterentwurf eines einheitlichen Polizeigesetzes des Bundes und L nder(BRD), 1977.
-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4
- Siegfried Fleischmann, “Die Razzia”, Deutsche Polizei, 1973. 6.

W. LaFave/J. Israel, Criminal Procedure, (West Publishing:Minn), 1985.

Willson, O.W., Police Administration, 4th ed. New York : McGraw—Hill.

별첨

〈불심검문의 운영실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

경찰의 최일선에서 민생치안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치안연구소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우리 경찰관의 공동연구로

불심검문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담당하고 계시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컴퓨터로 일괄처리되기 때문에 응답자 개인에게 절대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지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십시오.

1996년 7월 일

치안연구소

해당란에 V를 해 주십시오. 주관식일 경우에는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다음은 피검문자의 불심검문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피검문자가 불심검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매우 비협조적이다 _____ 2. 비협조적인 편이다 _____ 3. 보통이다
 _____ 4. 협조적인 편이다 _____ 5. 매우 협조적이다.

2. 불심검문 중에 피검문자와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_____ 1. 자주 발생한다 _____ 2. 가끔 발생 _____ 3. 중간이다
 _____ 4. 별로 없다 _____ 5. 전혀없다

3. 피검문자가 불심검문 경찰관에게 불심검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경찰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 _____ 1. 자주 발생한다 _____ 2. 가끔 발생 _____ 3. 중간이다
 _____ 4. 별로 없다 _____ 5. 전혀없다

4. 불심검문시 피검문자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조합니까?

보기. 1. 매우 저항	2. 비협조적인 편이다	3. 보통이다
4. 협조적인 편이다	5. 매우 협조적이다.	
6. 실시한 적 없다		

- ◆ 신분증제시 _____
- ◆ 소지품 검사 _____
- ◆ 몸수색 _____
- ◆ 임의동행 요구 _____

불심검문 경찰관의 근무 행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1.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귀하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_____ 1 그냥 보낸다 _____ 2 구두로 주민등록번호를 질문하여 과출소에 조회의뢰
 _____ 3 소지품을 검사한다 _____ 4 몸수색을 한다
 _____ 5 임의동행 한다 _____ 6 기타 ()
2.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때 귀하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_____ 1 소지품을 검사한다 _____ 2 몸수색을 한다
 _____ 3 임의동행 한다 _____ 4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_____ 5 기타 ()
3. 귀하는 96년 1월부터 96년 6월 말까지 기간 동안에 불심검문과정에서 피검문자를 과출소나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사례가 몇명이나 됩니까?
 _____ 명
4. 귀하는 불심검문을 수행할 때, 피검문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보기의 번호를 해당란에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보기.	1. 매우 그렇다	2. 약간그렇다	3. 중간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질 문 문 항	번호기입
가) 몸수색을 한다	
나) 소지품 수색을 한다	
다) 피검문자에게 경찰관의 신분을 먼저 밝힌다	
라) 피검문자에게 불심검문 이유를 설명해준다	
마) 임의동행을 자주 하는 편이다.	

5. 귀하는 불심검문시에 피검문자가 흉기 및 무기를 소지하고 검문에 불응하거나 저항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사항에 대

하여 보기의 해당번호를 ()에 적어주십시오.

보기.	1. 매우 그렇다	2. 약간 그렇다	3. 중간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질 문 분 항	번호기입
가) 총과 같은 무기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파출소나 경찰서로 임의동행한다.	
다) 범인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절대로 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먼저 파출소나 경찰서에 보고하고 사후 조치를 기다린다.	

6. 귀하는 주로 어느 연령계층을 불심검문 대상으로 선정하는 편입니까?

- _____ 1. 20세이하 _____ 2. 20대-30대 _____ 3. 40대-50대
 _____ 4. 50대 이상 _____ 5. 차이가 전혀 없다.

7. 귀하는 남성과 여성 중 주로 누구를 불심검문 대상으로 선정하는 편입니까?

- _____ 1 남성 _____ 2 여성 _____ 3 차이가 전혀 없다

▣ 다음은 일제검문검색 관한 사항입니다.

1. 최근 3개월 동안 ('96년 4월, 5월, 6월)에 일제검문검색은 몇번 시행되었습니까? 월별로 일제검문검색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총 _____ 회 : 3월 _____ 회, 4월 _____ 회, 5월 _____ 회

2. 일제검문검색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매우 효과가 크다 _____ 2 약간 효과가 있다 _____ 3 중간 이다
 _____ 4 효과가 없는 편이다 _____ 5 전혀 효과가 없다

3. 일제검문검색 기간 중에 비번인 경우에도 검문검색 근무를 하십니까?

- _____ 1. 매우 그렇다 _____ 2. 약간 그렇다 _____ 3. 중간이다.
 _____ 4. 그렇지 않다 _____ 5. 전혀 그렇지 않다

▣ 평상시 불심검문의 효과와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귀하는 불심검문제도가 범인검거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매우 효과가 크다 _____ 2 약간 효과가 있다 _____ 3 중간이다
_____ 4 효과가 없는 편이다 _____ 5 전혀 효과가 없다

2. 귀하는 불심검문제도가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매우 효과가 크다 _____ 2 약간 효과가 있다 _____ 3 중간이다
_____ 4 효과가 없는 편이다 _____ 5 전혀 효과가 없다

3. 귀하는 지난 6월 한달동안 불심검문을 몇명이나 실시하였습니까? 대략 _____ 명

4. 귀하는 1996년 1월부터 1996년 6월 말까지 불심검문을 통해 몇명의 범인을 검거하였습니까? _____ 명

5. 불심검문 빈도에 대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보기에서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골라 ()에 적어 주십시오.

- | | | | |
|----|-------------|--------------|---------|
| 보기 | 1. 매우 그렇다 | 2. 약간 그렇다 | 3. 중간이다 |
| | 4. 그렇지 않은 편 | 5. 전혀 그렇지 않다 | |

- ◆ 순찰할 때마다 최소 1건 이상 실시한다 ()
- ◆ 순찰시 불심검문을 한건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 하루에 몇건이상 불심검문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

6. 귀하가 불심검문 실시 중에 파출소나 경찰서에 컴퓨터 조회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 불심검문 소요시간과 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순찰 중에 불심검문을 실시하여 피검문자에 대하여 파출소에 컴퓨터 조회를

의뢰하여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가장 빠른 경우와 가장 느린 경우, 그리고 평상시의 경우로 구분하여 적어주십시오.

측정시간 : 무전기 작동(파출소에 컴퓨터 조회의뢰)
 → 파출소 컴퓨터 단말기
 조회 실시 → 조회결과 통보 받음

가장 빠른 경우 : _____ 초 평상시 (보통) _____ 초
 가장 느린 경우 : _____ 초

2. 다음은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파출소의 컴퓨터 조회용 단말기에 관한 사항입니다.(2-1, 2-2 문항)

2-1.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파출소(혹은 경찰서)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는 최근 한 달 동안 고장장애가 몇번 발생했습니까?

대략 _____ 회 정도

2-2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단말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및 건의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3. 다음은 귀하가 사용하는 무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3-1, 3-2 문항)

3-1. 최근 한달동안 무전기의 고장 장애가 몇번 발생했습니까?

대략 _____ 회 정도

3-2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무전기 개선방안 및 건의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귀하는 현행 불심검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2가지만 해당란에 V표를 해 주십시오.

_____ 1 장비 미비

_____ 2 너무 빈번한 일제검문검색

-
- 3 시민들의 비협조
 - 4 불심검문 인력부족
 - 5 법률상 강제규정 미비
 - 6 불심검문 경찰관의 타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
 - 7 검문효과가 별로 없어서

■ 끝으로 불심검문제도(일제검문검색제도 포함)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적어주십시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성실히 응답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研究報告書 97-04

불심검문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1997年 3月 日 印刷
1997年 3月 日 發行

發行 金 大 圓
編輯 治 安 研 究 所
印刷 大 韓 文 化 社

0.1

000520